

2011 상반기 VOL. 6

11년, 새.로.운 시.작!

자활일기

— 초점기획

2011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자활사례관리의 이해 및 과제

— 자활리포트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표시기준
희망리본 프로젝트 소개

— 자활광장

'자활'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 이야기
한눈에 보는 전국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 자활동향

해외 I / 인도 : MNREGA 프로그램
해외 II / 벨기에 : 시민사회의 지원 도구들
국내 / 정부양곡배송사업 소개
독자코너 / 함께 풀어보는 자활 퍼즐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2011. 상반기 VOL.06

자활읽기

- 〈자활읽기〉에 실린 기사, 사진과 외부필자의 글은 중앙자활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www.cssf.or.kr)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자활읽기〉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 사항은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담당자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C . O . N . T . E . N . T . S

02 초점기획

- 02 2011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평가 지표
- 08 자활사례관리의 이해 및 과제

14 자활리포트

- 14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표시기준
- 24 희망리본 프로젝트 소개

28 자활광장

- 28 '자활'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 이야기
- 34 한눈에 보는 전국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38 자활동향

- 38 해외 I / 인도 : MNREGA 프로그램
- 45 해외 II / 벨기에 : 시민사회의 지원 도구들
- 54 국내 / 정부양곡배송사업 소개
- 57 독자코너 / 함께 풀어보는 자활 퍼즐

중앙 (재)중앙자활센터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저널 〈자활읽기〉 통권 제6호
 발행일 2011년 6월 발행인 정덕규 담당자 한보라
 발행처 (재)중앙자활센터 T. 02)3415-6900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www.cssf.or.kr
 디자인 · 인쇄 · 제작 소야디자인 T. 02)3406-9330

희망으로의 도약

희망사다리

‘희망사다리’ B는 자활사업의 통합브랜드로
 자활이 지닌 ‘빈곤탈출’의 가치와
 ‘희망메시지’를 키워드(Key word)로 삼고 개발되었다.

희망사다리 B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상징하는 사다리와
 희망을 상징하는 새싹과 파랑새를 형상화 한 것이다.

파일 원본은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2011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평가 지표

권정소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대리

평가진행 세부절차(자료입력방법,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에 대한 내용 및 기타 평가 지표에 대한 문의 사항은 중앙자활센터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광역자활센터 평가 지표

1. 광역자활센터 평가¹⁾의 개요

광역자활센터는 기초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목적에 부합하여 2011년에는 7개 광역자활센터(경기, 대구, 인천, 부산, 강원, 전북, 서울)에 대한 2년도(2010년1월부터 2010년 10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에 대한 기본원칙은 광역단위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 활성화 측면과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지역자원 동원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지원 유도를 추구한다.

평가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총괄하면서, 중앙자활센터는 평가업무 주관기관으로 평가 실행지원을 담당하며, 평가위원회에서는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현장평가 실시에 대한 참여를 진행한다. 평가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고 서류평가는 정량평가(39%), 정성평가(61%)로 구성되고 정성평가는 7개 광역자활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상대평가를 진행하며, 정량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1) 2004년에 인천, 대구, 경기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2008년에 부산, 강원, 전북지역으로 확대와 2010년에는 서울지역에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총7개 광역자활센터가 운영중이다.광역자활센터 평가는 2008년에 시범사업 참여지역인 3개 광역자활센터(인천, 대구, 경기)에 대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2009년에는 6개 광역자활센터(경기, 대구, 인천, 부산, 강원, 전북)에 대한 2009년 1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 광역자활센터 평가 지표 세부설명

2011년 평가 지표의 주요방향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역할 등에 대한 확립을 위한 지역단위 자활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등에 대한 평가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평가 지표는 대지표 4개와 세부지표 14개로 분류된다. 대지표는 광역단위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그리고 자활성과이다.

첫 번째 광역단위 자활사업에 대한 세부지표로는 광역단위 자활공동체 사업단수, 광역단위 자활공동체·사업단 참여자 수 그리고 자활센터 네트워크 구축·운영으로 광역자활센터의 직접사업에 대한 성과와 지역에서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를 본다.

두 번째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세부지표로는 자활공동체 컨설팅과 자활공동체 매출액 증가율로 지역단위의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성과를 평가한다.

세 번째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대한 세부지표로는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광역단위 자활상품 판매지원, 교육 지원, 취·창업 지원, 컨설팅 지원, 홍보 지원 그리고 자원동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즉,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목적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간접지원 효과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성과에 대한 세부지표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 수와 자활성공률에 대한 정량평가를 진행한다. 이 지표는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된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평가 지표이다.

3. 광역자활센터 평가 향후 방향

2011년 광역자활센터평가는 2011년 11월에 광역자활센터에서 평가 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분석, 정성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2011년 12월말에 최종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 우수기관에는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우선권 부여, 우수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 그리고 우수기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개선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후에 차년도 보조금 지급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광역자활센터 평가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성과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전문화 컨설팅 지원과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 차원에서 지도 및 감독 강화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2011년 광역자활센터 평가를 통해서 자활사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체계성 확립과 동시에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의 실효성 확대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지역자활센터 평가 지표

1. 지역자활센터 평가의 개요

지역자활센터 평가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참여자 수와 사업단 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활 사업에 대한 성과 기반을 구축하고, 2009년에는 자활 사업의 세분화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5개 대지표와 11개 세부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서류 평가로 진행되던 평가 방식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평가 기초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혼란도 많았지만, 자활 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도입 단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11년에는 2009년의 5개 대지표와 1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자활 사업 참여자들의 자립과 탈수급에 대한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지역자활센터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23개월이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평가 시점까지 평가 지표별 기초 자료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평가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기간(2011년 10월 ~ 11월)에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기초 자료를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연동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자활센터는 2011년 10월 중순에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입력한 자료를 서류화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확인을 받아 중앙자활센터로 제출하고, 중앙자활센터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과 증빙 서류 확인 작업을 진행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산출되면 지역자활센터의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11년 평가 지표는 자활 사업의 참여자 수에서 바우처 사업 참여자를 제외하여 참여자의 배점 비중을 높이고, 자활 성과 부문을 수급자 대상으로 제한하여 현실적인

탈수급을 위한 성공 방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자활 사업단 부문에서는 월평균 매출액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자활 사업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은 직무와 연관된 교육만 인정하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평가 기간 동안 최소 교육 이수 시간을 명시하여 종사자의 자기계발 등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한다. 지역자활센터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자원 동원 능력에 대한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는 자활 사업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기능 강화 및 자활 사업 참여자의 확대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평가 지표 설명 및 평가 지표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살펴보자.

2. 지역자활센터 평가 지표 세부 설명²⁾

1. 참여자 수

① 자활 참여자 수

자활 참여자의 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³⁾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배정된 참여자 중 자활근로사업단(자활인큐베이터사업단 포함)과 자활공동체(인정 후 3년 간)의 참여자로 평가 기간 동안 1회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을 인정한다.

참여자 수는 평가 기간 동안 실누계 인원을 적용하고 중복 인원은 제외한다. 단, 급여를 1회 이상 받았더라도 조건 불이행자는 제외하며, 자활공동체 참여자 중에서 일반인은 각 연도 최저 임금 이상자만 해당된다.

조건부 수급자는 평가 기간 동안 조건 불이행으로 중도 탈락한 경우 참여자 수에서 제외되며, 중도 탈락한 이후 다시 참여하여 지속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수로 포함한다. 자활 참여자의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 일반 수급자를 의미하며,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자활 참여자 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모집하는 경우가 아닌 지방 자치 단체에서 배정받은 인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9년에 이미 고지했듯이 자활 참여자 수에서 바우처 인원은 제외된다.

2. 자활 성과

자활 성과 부문에서는 자활 참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서 탈수급을 달성한 비율을 보고자하며, 자활 참여 수급자가 취업 및 창업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 준거 기준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다.

② 자활 성공률

자활 참여자 중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가 자활 성공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세부 기준은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인정하는 자활공동체를 창업하거나 이에 취업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반 기업, 장기 요양 기관 등에 일반 취업한 경우이며, 세 번째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복권 기금,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취업한 경우이며, 네 번째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개인 창업한 경우이고, 다섯 번째는 상위 유형 전환으로 수급자에서 자활 특례, 탈수급, 차상위 계층이 된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경우이다.

취업 인정 기준은 최저 임금 이상이거나 주 40시간 근무, 그리고 고용 보험 자격 취득에 관련된 증명 서류가 있으면 인정된다.

③ 취업 유지율

자활 성공자가 취업을 한 후, 3개월 유지자와 6개월 유지자에 대한 비율을 보는 것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성공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을 통한 자활 성공자의 사회 정착 과정 기간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활 사업 성공자를 분모로 하여 3/6개월 유지한 인원에 대한 비율을 보는 것으로 취업 유지율의 취업 인정 기준으로는 최저 임금 이상자 중 주 40시간이나 고용 보험 자격 취득 해당자이다. 단, 6개월 유지자 중에서 평가 기간 동안 한 번의 이직은 인정이 되지만, 이직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한다.

취업 유지율 지표는 자활 성공자 중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인정하는 자활공동체에 취업한 경우, 일반 기업, 장기 요양 기관 등 취업한 경우, 그리고 복권 기금,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취업한 사람만 취업 유지율에서 인정된다.

3. 자활공동체 지원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자활센터는 기관 당 최소 3개 이상의 자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⁴⁾.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는 자활공동체 수, 자활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자활공동체 생존율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

²⁾ 중앙자활센터에서는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지표 안내를 위해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 참여 마당 > 커뮤니티에서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가 지표에 대한 주요 의문 사항, 향후 평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이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받고 있다.

³⁾ 보건복지부는 기초 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하고 있다.

⁴⁾ 2011년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④ 자활공동체 수

자활공동체 수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인정한 공동체가 해당된다. 증빙 서류로는 인정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 자활공동체가 광역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자활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인정 자활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보는 것으로 급여액 기준은 평가 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책정한다. 이 기간 동안 참여한 사람 중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참여자는 참여자 수로는 인정되지만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⑥ 자활공동체 생존율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한 인정 자활공동체 중 2011년 9월 30일까지 운영 · 유지되는 인정 자활공동체의 비율(창업 유지 기간이 3년 초과된 인정 자원 공동체의 비율)로 자활공동체가 독립해서 운영 · 유지되는 기간을 살펴볼 수 있다.

4. 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 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간병 · 집수리 · 청소 · 폐자원 재활용 · 음식물 재활용 사업의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 · 도시락 · 세차 · 환경 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단은 시장 진입형 사업단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가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매출액 지표를 참고하며,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단의

경우는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중 한 가지 지표를 선택한다.

평가 기간 중에 사업단 유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 유지 기간별 사업단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인큐베이터사업단의 경우는 자활 참여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단 매출액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제외된다.

⑦ 시장 진입형 1인당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은 사업단에서 사업 실시 결과 발생한 매출액의 총액으로 물품 판매 대금과 용역 수입금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평가 기간 중에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 진입형 사업단의 총매출액을 월별 참여자로 나눈 금액을 총 사업 기간으로 나누면 된다.

⑧-1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시장 진입형 1인당 월평균 매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⑧-2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사업단은 매출액보다는 근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문으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로 평가를 대처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지표를 선택할 경우 사업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용자 목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서비스 이용자가 10명 미만인 사업단은 제외된다.

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 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 조사 항목 구성과 내용은 평가 실시와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5. 교육 및 지역 사회 자원 활용

⑨ 참여자 직무 교육 이수율

자활 사업 참여자가 직무와 연관된 교육을 이수한 비율을 보는 것이다. 직무는 자활 사업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단과 연관된 직능 관련 교육으로 보고 법정 의무

교육과 소양 교육은 제외된다.

법정 의무 교육 범위는 지방 자치 단체 보조 사업자의 의무 교육 및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한 의무 교육 등이며, 소양 교육은 직무와 관련 없는 교육(인문학 교육 등)을 말한다.

산식으로는 자활 참여자 중 교육 이수자의 비율로 평가 기간 중에 참여자가 단 한번이라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교육 이수자로 인정된다.

인정 교육 프로그램 범위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자활교육센터(구, 가사간병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한 교육과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주관한 사업과 그 외 노동부 및 교과부에서 인증한 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이 해당된다. 또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문 외부 강사 기준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 경우도 인정된다.

교육 인정 증빙 서류는 교육 이수에 대한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⑩ 종사자 직무 교육 이수율

종사자 직무 교육은 센터 전체 종사자 중 센터장을 제외한 직무 교육 최소 이수 시간 이수자 비율을 본다. 이때 산식은 평가 기간 동안 7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종사자 수를 전체 종사자 수로 나눈 값이다.

종사자 중에 평가 기간 동안 6개월 미만 대상자는 총 20시간을 70시간으로 인정하며, 전체 종사자 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운영비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종사자가 해당된다.

또한, 평가 기간 중에 종사자에서 센터장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등 모든 평가에 산정되지 않으며, 종사자의 임신 및 병가 등은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때 교육 인정 범위는 종사자의 직무와 연관된 교육으

로, 단지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은 교육 시간만 인정하며, 대학 학위 과정(학사 · 석사 · 박사) 및 시간 확인 불가 교육은 제외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교육받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 시간, 교육 내용 등이 명시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⑪ 외부 자원 동원

외부 자원 동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서 실질적인 재정적 자금 지원, 물품 지원, 후원금 등을 통한 신규 개발 사업이나 공동 사업 실행 건수를 보고자 한다.

3. 지역자활센터 평가 향후 방향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는 2011년 11월 말에 결과가 산출되어 2011년 12월경에 보건복지부를 통해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우수 기관에게는 첫째, 우수 직원에 대해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훈련 추천권을 센터장에게 부여하고, 둘째, 정부 표창 및 장관 표창 우선권을 부여하고, 셋째, 자활 사업 우수 사례 기관으로 지정(Best Practice), 타 지역의 자활센터 모범 방문 기관으로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우수 기관에 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지역자활센터 평가를 계기로 자활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향후 자활 사업의 성과 효율성 극대화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발전과 더불어 정책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자활사례 관리의 이해 및 과제



이기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 교수,
한국사례관리학회 교육훈련위원장)

2011년 4월부터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48개 시군구
에서 사례조정회의를 운영중에
있다.

'자활사례관리' 개념 등을 정립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었으면 한다.

1. '사례관리'란 무엇인가? :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 발견하기

'사례관리'라는 단어를 접하기 전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미 클라이언트를 지칭하는 '사례'라는 단어와 사업을 운영하고 조직화하는 방식으로서의 '관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따라서 '사례관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며, 이미 해왔던 일이라는 가정과 해석이 '사례관리'에 대한 접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례관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개별 접촉을 통하여 그 사업에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을 하는 고객 관리, '집단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방식이 아닌 개별적 상담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개별적 접근', '특정 서비스, 혹은 단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더구나 '사례'라는 단어에서 관련한 기록을 연상하여, '사례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 혹은 해석의 차이는 '사례관리'에 대한 학문적, 체계적 접근보다는 '사례'와 '관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용어의 의미에만 근거를 둔 탓이기도 하며, '사례관리'가 진화해 온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사례관리는 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시각에서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 그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새 옷을 입고 있는 오래된 사회사업'(Moore, 1990)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사례관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그 초점을 달리 해 왔을 뿐만 아니라(Moxley 1997; Woodside & McClam 1998; Holt 2000; Huber 2000), case, care, service + management, coordination, navigation 등의 용어는 다양한 복지 환경적 맥락에서, 대상의 특성, 사업 목적에 따라 그 의미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Austin, 2001). 이렇듯 '사례관리'에 대한 혼란은 그 실체나 핵심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사례관리'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 사례관리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욕구 충족 방안, 지역 사회의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간의 분절이나 중복을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

관리'는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이나 서비스의 통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공통적인 기반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욕구 충족 방안, 지역 사회의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간의 분절이나 중복을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비록 사례관리의 초기 역사에서 그 주요 도입 목적은 만성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 정신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 이후 복지 국가 재정 위기에 의해 지역 사회 보호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 성과를 강조하는 영역에서 더욱 정교한 사례관리 시스템이 개발,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Frager, 2000 : Erdmann & Wilson, 2001).

이처럼 사례관리는 용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나 시대를 초월하며, 다양한 지역과 적용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실천 원리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Gursansky et al, 2003). 즉, ①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개발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것, ② 사례

관리 대상자는 사례관리 계획에 참여하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③ 서비스 혹은 보호 계획은 객관적 관점과 책임성에 기반한 계약 수립, ④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계 확장 추구, ⑤ 서비스 범주 내의 공식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대상자의 비공식적 자원이나 지지 체계의 적극적 활용, ⑥ 서비스의 결과는 변화 목표를 지향하며, 변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모니터링의 적극적 활용 강조, ⑦ 사례관리자는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계획을 기반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 ⑧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나 서비스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을 하되 이는 옹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사례'를 '관리'하다? : 기호학적 패러독스

한국적 상황에서 사례관리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의 발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나 전문성,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사회복지 조직의 급속한 확대와 관료화에 따른 서비스 대상 및 영역 간의 범주화된 서비스 제공, 제공자 중심의 정형화된 서비스로 인해 서비스 간 단절이나 중복,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 미충족에 대한 해

결책(안혜영 외, 2008 : 안혜영, 2010)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가 품고 있었던 전문성에 대한 회의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 해결의 드라마틱한 해법으로써의 사례관리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의 강화이나 전달체계 수준에서의 정비이나에 대한 논란은 ‘사례관리’라는 단어 안에 내재된 기호학적 패러독스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즉, ‘사례’라는 단어는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단어이자 직접적 실천의 요소를 담고 있는 미시적 실천을 위한 전문가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면 ‘관리’라는 단어는 보다 딱딱한 이미지, 힘을 통한 영향력의 행사 등 간접 실천 혹은 중간 범위의 실천(Clarke & Newman, 1997), 이를 수행하는 관리자를 연상시킨다. 특히 ‘관리’라는 단어에 포함된 신관리주의는 기업의 경영 원리와 기법들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관리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 성과 지향적 관리, 임파워먼트, 품질 관리 기법, 유인(incentive) 체계, 마케팅 기법, 고객 만족 경영 기법 등을 행정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정부 실패로 복지 국가 위기, 국가 재정이나 관료 기구의 무분별한 팽창을 극복하고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에 대한 반발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반관료주의, 시장 중심주의의 영향으로 평가된다(Coulshed & Mullender, 2001). 즉 ‘사례관리’를 통하여 ‘전문가’와 ‘관리자’라는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그 목표 자체도 직접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만족에 초점을 두며, 간접 실천은 자원의 확대나 효율적 배분이 강조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 예산은 증

가할 수밖에 없는, 혹은 비용 효과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만족을 포기해야 한다는 대척점, 즉 시소의 양편에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적 판단과 관료주의적 판단, 또는 임상과 행정의 갈등이 조직 차원에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자의 내적 갈등이 되기도 한다. 과연 사례관리자는 전문가(professional)인가? 관리자(manager)인가? 나아가 관리자로서의 과업이나 정체성이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낳게 된다(Exworthy & Halford, 1999). 한편 다음과 같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전문적 역량과 관리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전문적 역량과 관리 역량을 개인이 모두 가질 것인가? 조직 안에서 분담할 것인가? 이를 위해 다양한 해법이 시도될 수 있지만 본질적 모순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경계한다. 특히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의 주요한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경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자활사례관리 : 자활 성과 관리?

전술한 사례관리의 목적을 자활사례관리에 적용해 본다면, 자활사례관리란 자활이라는 성과 목표를 효과적 혹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라는 서비스 전달 방식을 적용하는 것. 그리하여 참여자의 욕구나 변화 목표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활 사업 내의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투입된 자원 간의 충돌이나 분절을 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직

“ 사례관리라는 접근이 시도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실천적 과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과정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 즉, 운영 체계를 필요로 한다.”



접 서비스 기능을 하던 조직이 사례관리 도입을 두고 고민했듯이 ‘자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써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즉, 사례관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상담이나 지원 활동으로 묘사되는, 단위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의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방식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이나 ‘사례관리’이냐의 고민은 결국 “지역자활센터를 자활이라는 단위 서비스 혹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문화할 것인가?” 즉, “사례관리의 주요 기능을 외부에 두고, 참여자에게 사업단을 통한 근로 경험의 제공, 취업이나 창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문화할 것인가?” 혹은 “참여자의 자활(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이라는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 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사실 이와 같은 고민은 비단 자활 영역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사례관리라는 접근 방법이 총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

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들은 몇몇 시범적 사업을 제외하고는 직접 서비스 기능이 강조되는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사례관리라는 서비스의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전달 방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례관리라는 접근이 시도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실천적 과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과정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 즉, 운영 체계를 필요로 한다(O'Connor, 1988). 이러한 운영 체계의 주요 요소들은 전담 사례관리자(사례관리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직무가 명확하게 부여된, 또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경험에 있는 사람)가 있어야 하며, 특히 직접 서비스 기능이 많은 조직의 경우는 사례관리가 독립된 부서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 조직의 주요 업무 수행 방식을 횡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만이 아닌 모든 직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 사례관리가 자활이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이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전제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구심점을 가지고 협력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전제를 지역자활센터는 충족할 수 있는가?

단위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모르지만 사례관리 기능이 통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입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사업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취·창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입(예산, 인력 등)의 총량도, 전문성과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자활’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에서 ‘사례관리’라는 서비스의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자활센터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동일한 지점을 지향하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에서 지역자활센터가 단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전문화의 주요 성과를 이룬 곳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의 통합 기능이 필요한 사례관리 기능이 강조되는 지역도 있는 등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이기연 외, 2008). 그러나 제도적 이상형이라 할 수 있는 기능 규정은 사실상 성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사례관리의 기능을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운영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꿀 것인가? 제도적 이상형을 지향하기 위해 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력(이상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포함하여)할 것인가? 우문이지만 현재의 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관리와 관련한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혹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질문에 지역자활센터의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즉, 현재의 구조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례관리가 배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사례관리가 자활이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이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전제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구심점을 가지고 협력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가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과 자활이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3조(운영기본원칙) ① 자활 센터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 :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변화의 효과, 재정 투자의 효과, 사업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이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새로운 사업 수행에 환류하여 활용되도록 한다(2010.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침 중)

4. 자활사례관리의 또 다른 과제 : 자전거 곡예(juggling)에서 내려오기

희망리본 사례관리, 인큐베이팅 사례관리, 복지-고용 통합 사례관리, 각각의 사업별로 추진되는 사례관리의 적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희망리본 사업은 재정 성과 방식을 도입

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영역이므로 논외로 하지만 인큐베이팅 사례관리와 복지-고용 사례관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결국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된 참여자의 자활이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통합적 서비스(지역자활센터 내부의 서비스를 포함하여)를 제공한다는 사례관리의 주요 정의를 중심으로 볼 때 분리된 작업이 필요한지, 또한 이러한 접근이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투입-과정-결과라고 하는 논리 모델의 주요 가정을 기반으로 질문을 할 때, 이러한 분리는 그렇지 않아도 제한적인 투입을 기반으로 사례관리를 실천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좀 더 효율화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유용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자활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 | | |
|--|--|--|
| 안혜영·강혜규·민소영·이기연,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 업무매뉴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8. | Di Gursansky, Judy Harvey, Rosemary Kennedy, Case Management: policy, practice and professional busines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Woodside, M. and Tricia M., Generalist Case Management: A Method of Human Service Delivery, 3rd edition, Pacific Grove: Thomson/Brooks-Cole, 2005. |
| 안혜영,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실천의 현재”, 『한국 사례관리실천의 다양성과 혼돈,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례관리학회, pp.119 - 147, 2010. | Erdmann, Y. and R. Wilson, Managed Care : A View from Europe,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2:273-91, 2001. | Moore, S. T. A social work practice model of case management: The casemanagement grid, Social Work, 35, 1992. |
| 이기연·박지영·이은정, 『지역사회복지·고용 통합사례관리서비스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자활사례관리모델개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2008. | Exworthy, M. & S. Halford, eds, Professionals and the New Managerialism in the Public Sector,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9. | Moxley D. P., 김만두 편역, 사례관리실천론, 서울 : 홍익재, 1993. |
| 함철호·이기연, 『공공사례관리의 과제,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례관리학회, 2010. | Frager, S. Managing Managed Care: Secrets from a Former Case Manager,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0. | O'Connor, G. Casemanagement systems and practice, Social Casework, 69, 97-106, 1988. |
| Coulshed, V. & A. Mullender, Management in Social Work, Palgrave: Hampshire, 2001. | O'Conner, G. G. Case Management : System and Practice,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23(1):1-27, 1988. | |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표시기준

글 ● 박용구(중앙자활센터 자활공동체 경영지원단 단장)

식품 등의 표시기준

최근 소비자들은 ‘구입하려는 이 식품이 안전한지, 이 식품을 섭취했을 때 몸에 좋은지’ 등 제품의 안전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식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는 제품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 표시제이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의사항 표시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

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표시를 통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자·판매자, 판매자·소비자 사이의 중요한 정보교류의 수단이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자활생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모 유통센터에서 판촉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 때 한가지 속상한 일을 겪었다. 자활생산물 중에서 식품 종류가 모두 판매 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제외된 이유를 확인해보니 식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표시기준이 우리 자활생산물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판매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자활생산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여 종이다. 좋은상품을 열심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는 식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생산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앞으로 많은 자활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될 수 있도록 ‘표시사항’ 표기를 철저히 준수했으면 한다.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표시기준



1. 식품표시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도

1)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식품표시기준 및 영양표시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고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규정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며, 이 기준은 1996년 보건복지부 고시(제95-67호)로 제정된 이후 모두 2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대다수의 수입 식품 및 가공식품 등에 적용되는 가장 주요한 표시 규정이며,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기준은 별도의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2)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률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 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 관리법」, 「주세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양곡관리법」, 「먹는물관리법」등이 있다.

2. 표시 대상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구 분	세부 표시 대상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수입 식품 또는 수입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유기가공식품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또는 수입 식품 ※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
기구 또는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제품을 포함)
	용기류(수입제품을 포함)

Tip. ‘자연상태의 식품’이란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식품을 말하며, 용기·포장에 넣지 않거나 진공포장을 제외한 투명한 용기·포장에 넣은 자연상태의 식품은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표시항목)을 정하고 있다.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기타식품 등의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시장소	구분	식품 표시사항	식품첨가물 표시사항	기구·용기·포장 표시사항
주표시면	제품명	제품명	—	—
	내용량과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내용량	—	—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식품유형	—	—	—
	제조연월일	제조연월일	—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	—
일괄표시면	원재료명과 함량	원재료명과 함량	재질	—
	성분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	—
기타표시면 (모든 면에 표시 가능)	업소명과 소재지	업소명과 소재지	업소명과 소재지	—
	영양성분	—	—	—
	주의사항 표시	주의사항 표시	주의사항 표시	—
	기타사항 표시	기타사항 표시	기타사항 표시	—

4. 표시 방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최소 판매 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병마개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장소 별 표시사항 및 활자 크기

표시장소	구분	활자크기(포인트)		식품 표시사항	식품 첨가물 표시 사항	기구·용기·포장 표시 사항
		포장면적 150㎢ 이상	포장면적 150㎢ 이하			
주표시면	60이상	60이상	제품명	제품명	—	—
	120이상	120이상	내용량과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내용량	—	—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80이상	80이상	식품유형	—	—	—
	100이상	100이상	제조 연월일	제조연월일	—	—
	100이상	100이상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	—	—
일괄 표시면	70이상	50이상	원재료명과 함량	원재료명과 함량	재질	—
	70이상	70이상	성분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	—
기타 표시면 (모든 면에 표시 가능)	80이상	80이상	업소명과 소재지	업소명과 소재지	업소명과 소재지	—
	80이상	60이상	영양성분	—	—	—
	80이상	60이상	주의사항 표시	주의사항 표시	주의사항 표시	—
	80이상	60이상	기타사항 표시	기타사항 표시	기타사항 표시	—
	60이상	60이상	기타사항 표시	기타사항 표시	기타사항 표시	—

주표시면 면적	활자 크기(포인트)
35㎢ 미만	12 이상
35㎢ 이상 100㎢ 미만	16 이상
100㎢ 이상 200㎢ 미만	24 이상
200㎢ 이상 450㎢ 미만	30 이상
450㎢ 이상	36 이상

6)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 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

1) 육류 등 냉동식품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2)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3) 개봉 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개봉 시 캔 절단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4)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5) 식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나. 식품첨가물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 문구 표시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식품 포장용 랩을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주의문구를 눈에 띄게 잘 표시한 사례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특정원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문구를 눈에 띄게 잘 표시한 사례



빙초산에 주의문구를 눈에 띄게 잘 표시한 사례

2) 식품 포장용 랩은 지방 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3)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 · 포장은 식품가열 · 조리 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

4) 유리제 가열 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 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 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6. 식품의 제품명 표시기준

제품명 일반 기준

영업자는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여 허가관청(수입 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품에는 신고 또는 보고한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명에 상호 · 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품명은 주표시면에 6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명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인 만큼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비자를 오도 · 혼동시키는 표현
-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 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 과대의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7. 식품의 유형 표시기준

식품 유형은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8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다류
- ② 음료류(기타 음료에 한한다)
- ③ 특수 용도 식품
- ④ 기타 식품류 중 추출 가공식품
- ⑤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이외의 일반 가공식품
 - 식품의 유형에 따라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한 식품
- ⑦ 식품별 개별 기준에 의하여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8. 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

업소명 및 소재지란 제조업소, 판매 업소 등의 명칭과 그 주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표시 장소는 모든 표시면에 가능하며 8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 등 제조 · 가공업

식품등 제조 · 가공업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식품소분 · 판매업, 유통 전문 판매업

식품소분 ·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해당 식품의 제조 · 가공업의 업소명(수입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수입판매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 신고 시 신고 관청에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9. 식품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

가. 표시 방법

해당 일자로 표시	제조일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음료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는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은 아니나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빙과류는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수입 식품	주류는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 장소

제조연월일은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연월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기준

가. 표시 방법

해당 일자로 표시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 하여야 한다.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	제품의 제조 · 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수입 식품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해당일의 표시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 한다.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 장소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장소는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앞면 좌측 상단의 표시일까지

11.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

가. 표시 방법

해당일자로 표시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수입 식품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해당일의 표시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 장소

품질 유지 기한은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가. 통·병조림

① 내용물은 고품질 및 내용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산성통조림식품은 ‘산성통조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레토르트식품

‘레토르트식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냉동식품

①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여부 등에 따라 ‘냉동 전 가열제품’ 또는 ‘냉동 전 비가열제품’으로 구분하여 추가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은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냉동식품은 해당 식품의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 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조리 또는 가열 처리가 필요한 냉동식품은 그 조리 또는 가열 처리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

가. 원재료

-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95퍼센트(%) 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조 관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립산물(‘전환기’로 표시된 유기농립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이하 ‘유기농산물’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 ②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에는 [표 3]의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 시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사선 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유전자 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⑥ 당해 식품에 사용하는 용기·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 분해성 재질이어야 한다.

나. 제조·가공 등 방법

- ①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적(발효, 훈제 등) 제조·가공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첨가물을 최소량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유기가공식품과 비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비로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비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한 때에는 비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제조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 재질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명, 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 내용량 등은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식품 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 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비내수용 전분제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비내수용 전분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5)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지면 상 중요내용만 소개합니다. 전문은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 지식마당 > 발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고 문 헌

- 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7호(2010.12.30,개정)]
-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위생교육자료 (식품의 표시기준 2011.3.23)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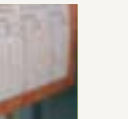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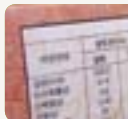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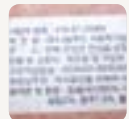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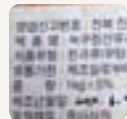
세트 포장 제품에 대한 표시 방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한 이러한 제품들을 선물 세트 형태로 구성하여 포장한 경우에는 세트 포장의 외포장지에 세트 포장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유통기한은 제외)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세트 포장의 외포장지에 구성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하였다 하여 개별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각 제품별 표시 사항을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포장지에 세트 포장한 경우에는 각각의 표시사항을 외부 투명포장지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트 포장 제품의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 중 가장 짧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세트 단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표시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우수 자활공동체 소개



(유)나눔푸드의 생산품은 뭔가 특별하게 있다?!

글 ● 한보라(중앙자활센터 사업교육팀 사원)

식품표시기준은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1의 근거이지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11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유)나눔푸드 장현주 본부장을 만났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지원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된 (유)나눔푸드는 대표 자활생산물인 ‘홍삼’이 부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장 본부장은 국내·외 바이어에게 홍삼을 소개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유)나눔푸드는 2003년 ‘먹거리사업단’에서 시작하여 현재 도시락, 급식, 유과, 홍삼, 농산물가공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홍삼은 지난해 ‘굿스굿스’ 상품으로 선정되어 자활생산품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장현주 본부장은 (유)나눔푸드 중 홍삼 부분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 오랜 홍삼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홍삼은 지역의 재배농가 수나 가치를 보았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분명히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한번 해 보자’고 판단한 후 (유)나눔푸드에 합류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해온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인삼 농사를 짓던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궁해 보면 통한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쓸 정도로 35명의 직원과 한 마음, 한뜻이 되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2011년 설날 영업 매출만 해도 1억원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유)나눔푸드 장현주 본부장



(유)나눔푸드의 비결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식품표시기준’이다. 각 제품마다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제품의 영양 성분과 영업 신고 번호, 중량, 제조일, 원재료 및 함량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준다면 ‘내가 잘 만든 것이니, 한번 먹어 봐’ 이렇게 말하고 주면 되는데 우리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표시사항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장 본부장은 요즘 소비자들이 기준을 먼저 보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표시사항을 꾸준히 확인하여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새롭게 변하는 표시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법적 규정 사항들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지만, 같은 분야 업종 중 조금 더 잘 나가는 업체를 먼저 방문하여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옛날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시작이 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를 정말로 잘 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다보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작한다면 분명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자활생산품에 널리 사용된다면 분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이 끊기게 되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 인원조정 없이 모든 직원이 함께 일하는 것이 (유)나눔푸드 장현주 본부장의 꿈이자 목표이다. 📌

TIP.

○식품위생관련 교육은 **한국식품공업협회**(<http://www.kfia.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www.hfoo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관련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년에 8시간씩 반드시 이수하여야 생산물 영업을 가능하다.



새롭게 태어난 당신을 응원합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 소개

정리 ● 최윤희(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사원)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시작한 희망리본 프로젝트(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총 9,200명의 대상자가 서비스의 직접 수혜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으며, 사업지역도 경기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강원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한편 희망리본프로젝트의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성과중심과 사례관리 중심이라는 두 목표에 대한 밸런스(balance) 문제는 2년차를 지나면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기존 자활사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에서 나타나는 성과보다도 높은 성과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업과 창업률, 취업유지율, 탈수급이라는 성과 목표와는 별개로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자활, 자립에의 민간서비스의 새로운 시도들 또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그동안의 성과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 특성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의 주요 특성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참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4~50대 연령층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취·창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학력에 있어서 중졸 이하의 저학력인 참여자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당뇨, 간질,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참여자도 26.7%에 달하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비율도 6.3%를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인 근로 취약 계층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들 취약 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보호유형

	2009년	2010년	합계	비율(%)
일반수급	395	982	1,377	26.2
자활특례	12	24	36	0.7
조건부수급	1,142	1,594	2,736	52.0
차상위	451	659	1,110	21.1
합계	2,000	3,259	5,259	100.0

● 성 별

	2009년	2010년	합계	비율(%)
남	629	1,017	1,646	31.3
여	1,371	2,242	3,613	68.7
합계	2,000	3,259	5,259	100.0

● 나 이

	2009년	2010년	합계	비율(%)
20대	185	596	781	14.9
30대	283	511	794	15.1
40대	783	1,262	2,045	38.9
50대	594	736	1,330	25.3
60대	155	154	309	5.9
합계	2,000	3,259	5,259	100.0

● 학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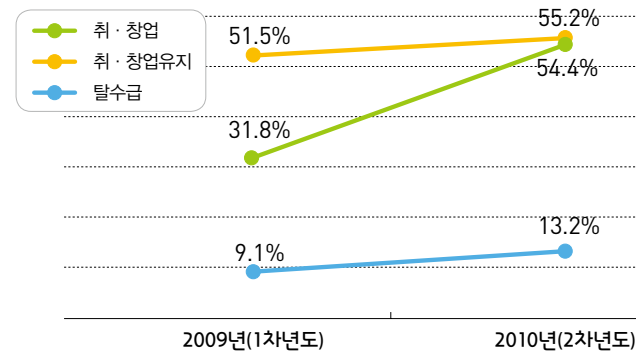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합계	비율(%)
4년제대학	133	327	460	8.7
고등학교	1,142	1,834	2,976	56.7
무학	32	38	70	1.3
전문대학	124	277	401	7.6
중학교	363	537	900	17.1
초등학교	206	246	452	8.6
합계	2,000	3,259	5,259	100.0

● 질 병

	2009년	2010년	합계	비율(%)
있음	636	768	1,404	26.7
없음	1,364	2,491	3,855	73.3
합계	2,000	3,259	5,259	100.0

주요 사업 성과

1. 기본 성과



* 2011. 5월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 2010년 성과는 진행중으로 2011. 8월 최종마감.

2009년도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성과급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만족하는 일자리에 전체 참여자의 31.8%에 해당하는 635명이 취업하여 30일 이상 유지하였고, 51.5%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9.1%인 181명이 탈수급하거나 탈빈곤한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취·창업 후 일정기간 취·창업을 유지

하여 탈수급에 이르는 기간을 요하는 사업상 특성으로 인해 시범사업 완료 기간이 1년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요건을 만족하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사업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2010년도의 경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54.4%로 2009년도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 취업 유지 및 탈수급 성과도 2009년도에 비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복지 서비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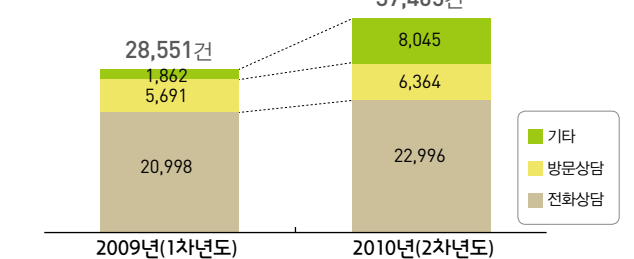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한 양육·간병·사회적응 등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와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을 유지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상담 횟수

구분	2009년			2010년		
	총건수	평균	비율(%)	총건수	평균	비율(%)
전화상담 (sms포함)	41,996	20,998	73.5	91,982	22,996	61.5
방문상담	11,382	5,691	19.9	25,456	6,364	17.0
기타	3,724	1,862	6.6	32,180	8,045	21.5
계	57,102	28,551	100	149,618	37,405	100

* 희망리본 전산 시스템에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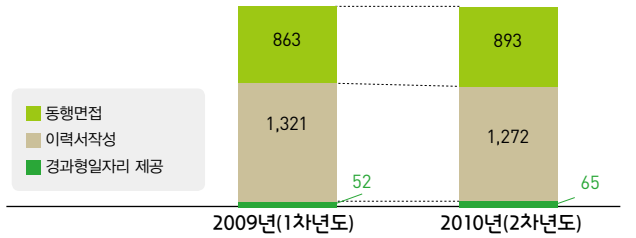
－ 상담 횟수 변화 추이



● 소득 창출을 위한 연계 활동

구분	2009년			2010년		
	총건수	평균	비율 (%)	총건수	평균	비율 (%)
경과형 일자리제공	104	52	0.9	261	65	2.6
이력서작성	2,641	1,321	24.3	5,086	1,272	49.9
동행면접	1,726	863	15.9	3,570	893	35.1
창업알선	201	101	1.9	58	15	0.6
복지 및 구인기관 연계 (MOU)	6,198	3,099	57	1,201	300	11.8
계	10,870	5,436	100	10,176	2,545	100

－ 소득 창출을 위한 연계 활동 변화 추이



● 사회 서비스 세부 연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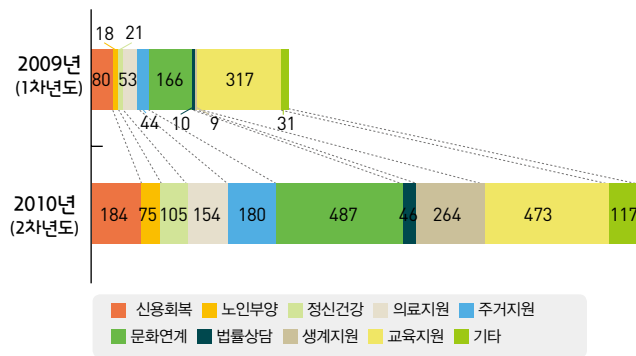
• 2009년

신용 회복	노인 부양	정신 건강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문화 연계	법률 상담	생계 지원	교육 지원	기타
159	36	41	106	87	331	20	18	634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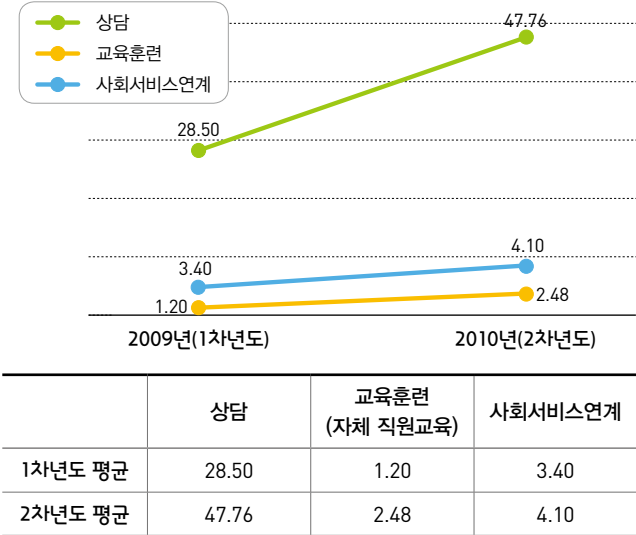
• 2010년

신용 회복	노인 부양	정신 건강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문화 연계	법률 상담	생계 지원	교육 지원	기타
574	224	333	466	538	1,725	139	795	1,530	512

－ 사회 서비스 세부 연계 내용 변화 추이



● 1인당 서비스 제공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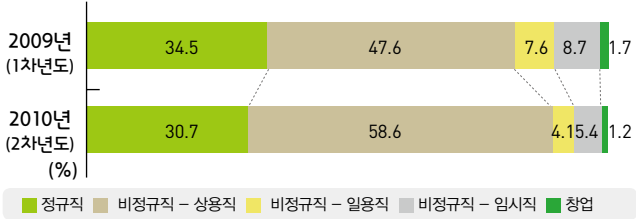
세부 성과 내용

1, 2차년도 사업 성과의 일자리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상용직이 증가되었는데, 정규직과 상용직을 포괄하여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decent jot)로서 평가한다고 할 때 이는 고용 형태의 측면에서도 점차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월급여 분포를 보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비율이 줄고 130만원 이상의 급여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급여수준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종구분에 있어서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훈련의 연계를 통한 취업 업종의 다양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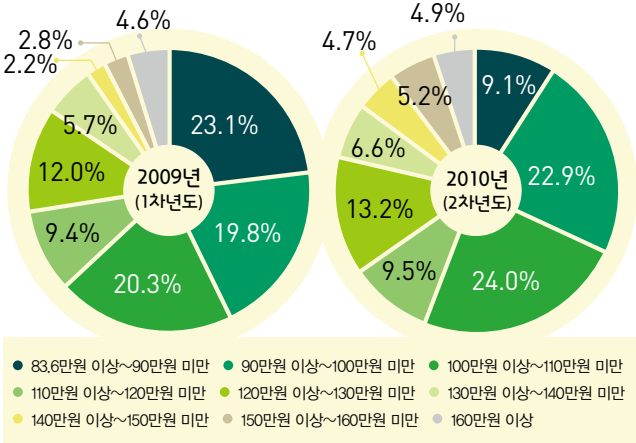
1. 일자리 특성

1) 취 · 창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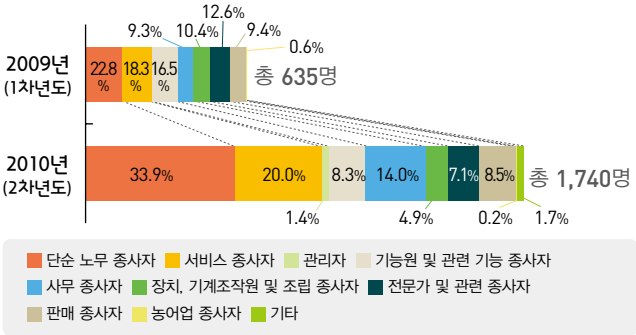
● 고용 형태



● 월 급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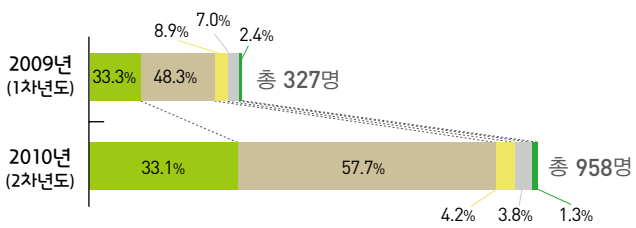
● 업종 구분



2) 6개월 이상 취 · 창업 유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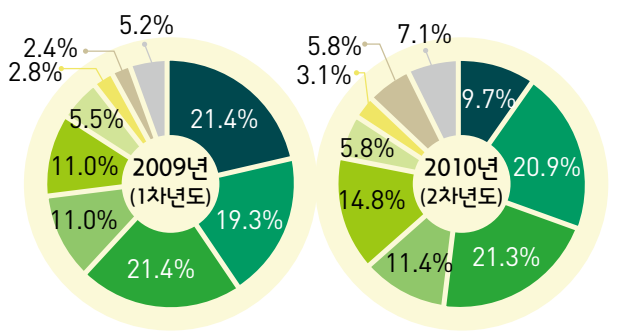
● 고용 형태

	2009년		2010년	
	계	비율(%)	계	비율(%)
정규직	109	33.3	317	33.1
비정규직-상용직	158	48.3	553	57.7
비정규직-일용직	29	8.9	40	4.2
비정규직-임시직	23	7.0	36	3.8
창업	8	2.4	12	1.3
합계	327		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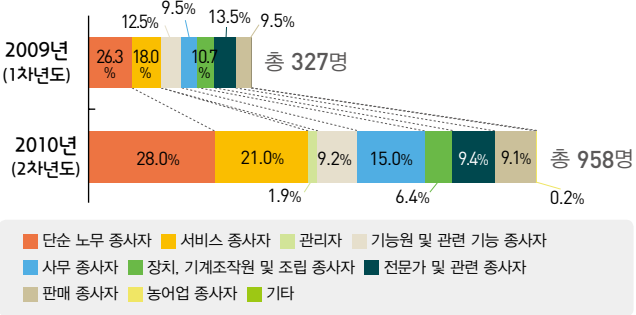


● 월 급여 분포

	2009년		2010년	
	계	비율(%)	계	비율(%)
83.6만원 이상~90만원 미만	70	21.4	93	9.7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63	19.3	200	20.9
100만원 이상~110만원 미만	70	21.4	204	21.3
11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	36	11.0	109	11.4
12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	36	11.0	142	14.8
130만원 이상~140만원 미만	18	5.5	56	5.8
14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9	2.8	30	3.1
15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	8	2.4	56	5.8
160만원 이상	17	5.2	68	7.1
합계	327		958	



● 업종 구분





'자활'과 함께 일하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이야기

글 ● 한보라(중앙자활센터 사업교육팀 사원)



지역과 광역에서 자활 사업 지원을, 광역자활센터

아침 7시 30분. 오늘도 서울 광역자활센터 사무실에는 불이 환하다. 전국 광역자활센터 중에서는 후발 주자로 합류하게 되었지만 정호성 센터장이 자활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은 남다르다. 1997년 자활 사업 시범 사업 시기부터 '자활'과 함께 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광역자활센터 존재의 목적은 지역자활센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광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서 자활 사업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즐겁습니다.”

현재 전국에 7개 광역자활센터와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 사업 참여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참여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본다면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에서 자원을 연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호에서는 '자활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이 전하는 오늘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활 생산품이 잘 팔려서 주민들이 신나서 일을 하게 되고, 자활 사업 종사자가 더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부족하지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호성 센터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자활센터장 모임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가끔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자활 사업 종사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보면 늘 모든 것이 즐겁고 보람차다. 최근 자활 사업 관련 책자들을 모으고 분류하여 자활 도서관을 만든 일, 교육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강의실에 촬영 시스템을 만든 일, 찾아가는 교육 등 자활 사업 종사자를 생각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1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α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본다면 서로 흩어져서 사업을 하면 각자의 사업 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엮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외부 자원을 끌어오기가 훨씬 쉬워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요.” 정호성 센터장은 앞으로 추가될 예정인 광역자활센터가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더 모범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한다. 자활 사업 현장과 종사자를 위해 고민하면서 더 나은 내일의 자활을 꿈꾸는 모습이 아름답다. 📺



어떤 이에게는 일자리를 찾아 주고,
다른 어떤 이에게는 한 가정의 행복을 찾아 주고
또다른 이에게는 더 큰 꿈을 볼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주는 자활.
'자활'과 함께 일하며 웃고, 웃는 동안 참 많은 정이 들어 버렸다.

참여주민에게 희망을, 희망리본 프로젝트

“선생님, 저 이번에 취업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밝고 씩씩하다. 처음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자활 사업 참여 주민이 취업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기에 오늘도 기쁨 두배 행복 세배이다.

“자활의 목적이 취업이라면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꿈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개인이 희망하는 욕구에 맞추어 일대일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희망리본 프로젝트(이하 '희망리본')는 현재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강원, 광주, 대구 7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희망리본은 참여 주민의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돕고,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이 중 인천 희망리본 본부에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2명의 사례관리사들이 이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사례관리사는 참여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희망하는 꿈에 맞추어 일자리를 찾아 준다. 이 덕분에 작년 기



준으로 365명에게 일자리와 함께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희망리본에 와서 취업한 분들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함과 행복을 느껴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희망리본이 하루빨리 본 사업으로 정착되어 참여주민들뿐만 아니라 자활 사업의 새로운 희망의 경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상준 국장은 자활 사업 참여 주민들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바라봐 줄 것을 당부한다.

“희망리본에 참여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근로 의욕이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한다면, 시장 경쟁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편견과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망리본을 통해 사례관리사와 참여 주민은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



지자체에서 자활 사업 지원을, 자활 담당 공무원

“지역자활센터와 공무원은 같은 자활 사업을 하고 있는 동료 아닌가요? 우리 지역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와 친하지요. 협력 또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일을 요청할 때 혹시 추가적인 일로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할 때가 더 많지요.”

자활 사업은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업무 처리할 때 혼란스러울 때도 많다. 게다가 성과가 잘 나지 않은 분야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공무원 중 자활 사업 담당을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김수미 주무관은 자활 사업을 담당하면서 올바른 사업 방향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자활과 저의 인연은 제가 동에 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자활을 관심 있게 지켜봤었고, 수급자가 오면 지역자활센터와 연계를 시켜주었어요. 이후 시에 와서 자활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고 난 후 자활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중요한 회의에 꼭 참석해야만 하는, 전문가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는 자활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다. 보통 시군구의 경우 통합조서관리팀, 기초생활보장팀, 자활고용팀으로 나뉘어 수급자 근로 능력 판정, 조건 부과, 자활 지원 계획 수립 상담 등의 업무들을 수행한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근로 능력 수급자 사례관리,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하며 시·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의정부는 자활 사업 참여자가 일주일에 약 4~5명씩 발생할 정도로 전국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반드시 해야 하는 희망키움통장, 생업자금융자, 자활 능력 판정, 자활 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량이 상당하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김수미 주무관 혼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음 놓고 휴가를 써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담당자가 여러 명 있는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억울할 만도 하지만 자활 사업 담당자로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정은 아직도 충분하다.

“가끔은 처음 자활 업무를 맡고 나서 잘 해보자고 각오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봐요. 개인마다 자활에 대한 생각과 경험, 마음가짐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하는 것,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의정부가 자활 사업 참 잘한다.’, ‘전국 시군구에서 1등이다.’ 라고 보아 주신다면 참 멋지지 않을까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도, 자활 업무를 담당한 것도 참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써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참 행복하다는 김수미 주무관. 미소가 더욱 밝게 빛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

자활 사업 제도 및 정책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당을 열고, 간병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아, 이 분들에게 자활이 없었다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활 사업은 다른 연구와는 조금 달라서 연구자에게는 매력에 있는 분야임에 틀림없어요. 이 분야의 연구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노대명 박사의 자활 사업 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1997년 지역자활센터가 자활 후견 기관으로 생겨났을 때 최초의 연구를 진행한 곳이다. 2000년 10월 자활 사업이 시작될 때 한편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계획을 구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활 사업에 대한 각종 지침, 기본 방향 등을 계획했다. 그것이 지금의 자활 사업 기반이 되어 자활 사업 참여 대상 선정, 자활공동체 육성, 5대 표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노대명 박사는 보사연에서 자활 사업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중에서 2000년 자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웠던 초창기 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해당 연구는 기초보장제도와 맞물려서 자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며 직업 능력이 낮은 분들부터 조금 높은 분들까지 단계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사연에서 자활을 연구하게 되면서 양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에 현장과 연구자들 사이에 괴리감 없이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보사연은 국책 연구 기관이다 보니 정부 부처의 요구를 가장 일선에서 제안 받는 편이다. 하지만 자활 사업을 연구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정부의 제도나 지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지역을 돌아보면서 실무자, 참여자를 만나는 기회를 갖고자 했고 정책을 요구하는 부처와 현장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연구자들과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활 사업은 사회적 기업, 마이크로크레딧 등 시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자활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에게도 다양한 관심 분야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활은 한 개인의 문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전체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자활 사업 제도 및 정책을 고민했던 노대명 박사에게 그 잠재력은 보람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



참여 주민에게 소액 자본 대출과 컨설팅을, 유관 기관 I

“저희가 지원한 예산으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때 참 보람되고 뿌듯하지요. 그분들은 사회 연대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저희에게 고마워하지만, 저희는 그분들이 이 사업의 가치나 의의들을 입증해 준들이니 오히려 더 고맙지요.”

2002년에 설립된 사회연대은행은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 경영 및 기술, 교육 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집중적으로 자활공동체를 지원했으며, 2011년 기준 1,220개 업체에게 총 29,32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금 본부장은 2004년 5월부터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해 오며,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보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한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이 보일만 하면 가정 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처럼 개선하고자 하지만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 참 안쓰럽지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높은 곳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낮은 곳을 보고 헤아릴 수 있다는 점이 참 좋더라고요. 아마 이곳이 아니었다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회연대은행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소셜 파이낸스 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박 본부장은 이를 위해서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내부적으로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2009년 미소금융이 시작되면서 정부 지원이 끊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기업, 일반 시민들의 풀뿌리 회원 참여로 기금이 확보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서 함께 잘 살기 위한 공동체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 세상이 조금씩 이나마 바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더욱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좀 더 힘내고 서로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 참여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던 히노애락만큼 박 본부장의 미소는 오늘도 환하게 빛난다. 🌈

주거복지사업단 연대로 협회 설립을, 유관 기관 II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편하게 물을 사용하게 되어 고마워요~.”

집수리 시공을 끝낸 후 돌아오는 길, 나도 모르게 마음이 뿌듯하다.

주거복지협회는 2009년 집수리자활사업단이 연대해서 만든 법인이다. 우리나라에는 ‘주거 복지’라는 인식이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꽤 오래된 영역이다. 현재 6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며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취약 계층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자 주거 복지, 정책과 연구, 교육 등 3가지 주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현대 제철과 함께 진행하는 ‘희망 에너지 주택 효율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10년 동안 진행되는데 집안의 에너지를 관리해 주는 에너지 코디네이터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새로운 자활 사업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주거복지협회는 전국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했다. 그 규모는 총 16억으로 295가구 및 41개 시설을 지원했으며 일자리 창출 인원은 350명에 달한다. 이러한 협회에는 82개 단체의 회원이 내는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집수리는 시공 전, 후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이 끝난 후 독거노인들이 집이 따뜻해졌다고 고마워하실 때 비록 제가 시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보람을 느껴요.”

주거복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수리는 에너지 효율을 늘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시공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높다.

앞으로 주거복지협회는 ‘주거 복지’라는 타이틀에 맞게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주거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관 등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더욱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집수리 지원하는 기관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 혹은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제 주거복지협회가 있으니 한 곳에서 통일성 있게 주거 복지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규모있는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주거복지협회, 현재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된다. 🌈



한눈에 보는

전국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정리 ● **한보라**(중앙자활센터 사업교육팀 사원)



중앙자활센터란?

전국의 자활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 체계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 욕을 높이고자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인프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란?

기초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 지원 체계를 광역 단위의 자활 사업 인프라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활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 중구 남창동 1-1 408호	02-318-4140	02-318-3507
부산	부산광역자활센터	부산 연제구 거제3동 457-10	051-868-5866	051-868-5868
대구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 북구 오원3가 1206	053-359-3730	053-359-3740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 남동구 간석3동 산27-5 사회복지회관4층	032-437-4051	032-437-2002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경기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179 세지빌딩45층	031-267-0140	031-267-1412
강원	강원광역자활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동 662 한국노총빌딩3층	033-244-0290	033-244-7883
전북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 사회복지회관4층	063-226-0388	063-223-0388

지역자활센터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	강남지역자활센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B-134	02-445-1801	02-445-1807
서울	강동지역자활센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563번지 1층	02-488-4585	02-488-4778
서울	강북지역자활센터	서울 강북구 미아 8동 323-51 3층	02-982-1414	02-983-1415
서울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서울 강서구 가양4동 179-1	02-3664-5920	02-3664-5922
서울	강서병화지역자활센터	서울 강서구 병화2동 851번지111단지APT 상가2층	02-2693-0624	02-2693-0661
서울	강서지역자활센터	서울 강서구 곰달래길 151	02-2605-1222	02-2605-0690
서울	관악북천지역자활센터	서울 관악구 은천동 493-3(양녕로61)	02-876-6730	02-876-6729
서울	관악일대농지역자활센터	서울 관악구 난향동 663번지 2층	02-854-6581	02-837-3973
서울	관악지역자활센터	서울 관악구 신림 1동 1631-19 평화빌딩 5층	02-867-8381	02-854-1985
서울	광진지역자활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4동 3-9 2층	02-499-8373	02-499-8378
서울	구로살타지역자활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여성복지회관	02-856-0516	02-856-0544
서울	구로지역자활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 4동 136-83 3,4층	02-838-5660	02-852-0550
서울	금천지역자활센터	서울 금천구 시흥 2동 241-7	02-806-1577	02-808-1574
서울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서울 노원구 월계 1동 66-7 경로당 4층	02-941-6594	02-941-6596
서울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1257	02-952-7185	02-952-0111
서울	노원지역자활센터	서울 노원구 상계 2동 404-7 2층	02-939-3538	02-930-3924
서울	도봉지역자활센터	서울 도봉구 방학 2동 366-19 방이골중합사회복지관 4층	02-955-1317	02-955-6053
서울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 1동 397-16 조흥빌딩 5층	02-2242-7578	02-2242-7579
서울	동작지역자활센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 5-1	02-822-7708	02-822-7725
서울	마포지역자활센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40 창업복지관3층	02-312-7942	02-312-7943
서울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02-324-1027	02-338-2609
서울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206 (3층)	02-797-5050	02-797-5085
서울	성동지역자활센터	서울 성동구 도선동70번지 창성빌딩 8층	02-2299-6658	02-2299-6651
서울	성북지역자활센터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16-6 지하층	02-927-2420	02-927-2421
서울	송파지역자활센터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75번지	02-416-7119	02-423-2787
서울	양천지역자활센터	서울 양천구 신림 2동 460-11	02-2601-6039	02-2601-6049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76-3 201호	02-848-0600	02-847-6137
서울	은평지역자활센터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8 신창빌딩 6층	02-307-1186	02-308-1186
서울	종로지역자활센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64-1 4층	02-3673-3963	02-3673-3965
서울	중구지역자활센터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36-6 재영빌딩 1층	02-754-2228	02-773-2229
서울	중앙유린지역자활센터	서울 중랑구 신내 1동 574 3층	02-436-4767	02-436-4768
부산	강서구지역자활센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 2337-5 번지 1층	051-973-6998	051-973-6997
부산	금정지역자활센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61 3층	051-508-2163	051-508-2123
부산	기장지역자활센터	부산 기장군 기정읍 대리리 175-5 우암BD 202호	051-724-3457	051-724-3459
부산	남구지역자활센터	부산 남구 문현 3동 239-83 2층	051-638-7212	051-638-7214
부산	동구지역자활센터	부산 동구 초량 3동 1162-9 해인빌딩 1101호	051-462-1466	051-462-1488
부산	동래지역자활센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473-5 관성빌딩 4층	051-529-8932	051-529-8933
부산	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38번지 대성빌딩 702호	051-253-1957	051-253-1970
부산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부산 영도구 동산1동 219-61 창원빌라 1층 101호	051-403-4592	051-403-4596
부산	부산진지역자활센터	부산 진구 부암3동 479-1 3층	051-816-9633	051-808-1409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산	북구지역자활센터	부산 북구 덕천동 399-1 광명빌딩 4층	051-341-9840	051-341-9843
부산	북구화정지역자활센터	부산 북구 금곡동 1880-11 성원빌딩 2층	051-365-0045	051-365-0046
부산	사상지역자활센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422-3	051-301-8681	051-301-8683
부산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부산 사하구 다대 2동 84-4	051-261-0750	051-261-0754
부산	사하지역자활센터	부산 사하구 다대 1동 1549-11 물운대입대상가 2층	051-263-6697	051-263-6695
부산	수영지역자활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 529 영화빌딩 3층	051-757-4034	051-757-4066
부산	연제지역자활센터	부산 연제구 연산 6동 2018-27 2층	051-852-8219	051-853-1944
부산	중구지역자활센터	부산 중구 광복동3가 1-3번지 3층	051-463-4584	051-463-4582
부산	해운대지역자활센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895 K빌딩 3층	051-543-0015	051-545-2542
대구	달서지역자활센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1-3 이곡2동사무소 2층	053-585-6612	053-585-6618
대구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64	053-644-1080	053-644-1081
대구	달성지역자활센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2층	053-639-6971	053-639-6972
대구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대구 남구 이천동 557-9 2층	053-476-1991	053-476-1993
대구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대구 북구 산격동 978번지	053-952-8592	053-953-8595
대구	대구수성구지역자활센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237-3번지 2층	053-767-0408	053-761-0019
대구	동구지역자활센터	대구 동구 검사동 985-4 청곡빌딩 2층	053-986-0826	053-986-0828
대구	서구지역자활센터	대구 서구 대당동 906	053-555-4848	053-555-4850
대구	중구지역자활센터	대구 중구 남산4동 2482-458 까치아트빌딩가 104-1	053-256-3083	053-256-3084
인천	강화지역자활센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	032-934-1189	032-934-8805
인천	계양지역자활센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032-543-3370	032-554-2180
인천	남구마추출지역자활센터	인천 남구 용현 5동 371-13	032-888-0231	032-889-0231
인천	남구지역자활센터	인천 남구 학익 1동 332-2	032-867-8414	032-867-5672
인천	남동구지역자활센터	인천 남동구 간석 3동 37-4	032-422-4318	032-422-4319
인천	동구지역자활센터	인천 동구 화수 2동 79-2	032-761-0766	032-761-2675
인천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 부평구 심정동 열무로로 103 6층	032-521-4561	032-521-4563
인천	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99-7 부평구재활운동센터 2층	032-525-1982	032-525-1052
인천	서구지역자활센터	인천 서구 검암동 679-3 4층	032-569-1491	032-569-1495
인천	연수지역자활센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485-2	032-816-1995	032-821-1995
인천	중구지역자활센터	인천 중구 전동 2-1 (구) 인천여고 3층	032-763-1988	032-763-1989
광주	광산지역자활센터	광주 광산구 송정2동 1124-23	062-941-1633	062-941-1635
광주	남구지역자활센터	광주 남구 봉선 2동 132	062-676-5086	062-676-6762
광주	동구지역자활센터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7-1 (구) 동구청 2층	062-228-1410	062-222-6190
광주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광주 북구 양산동 410-1	062-576-6970	062-576-6973
광주	북구일대지역자활센터	광주 북구 신안동 14-2 (2층)	062-524-0377	062-524-0378
광주	북구화양지역자활센터	광주 북구 용봉동 1372-1	062-515-5517	062-511-8917
광주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광주 서구 농성동 97-7 2층	062-375-0384	062-375-0386
광주	서구지역자활센터	광주 서구 양동 456-120번지 3층	062-351-3029	062-351-3026
광주	광산구지역자활센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1025-2번지	062-960-7964	
대전	대덕구지역자활센터	대전 대덕구 대회동 35-66 주민복지회관 2층	042-628-9723	042-628-9722
대전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대전 서구 용문동 255-66 주원빌딩 5층	042-527-1654	042-527-1655

개소일
2010.12.1
센터장 정호성
직원수 6명

개소일
2011.7.1
센터장 김문기
직원수 5명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은 중앙자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개소일
2011.3.1
센터장 류재룡
직원수 4명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전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441-11 온천헤미리타운 103호	042-824-1982	042-824-1983
대전	동구지역자활센터	대전 동구 인동 74-8 201호	042-622-8890	042-673-5051
대전	중구지역자활센터	대전 중구 대흥동 97-8 2층	042-221-4021	042-221-4026
울산	남구지역자활센터	울산 남구 신암동 564-23	052-227-0991	052-227-0993
울산	동구지역자활센터	울산 동구 방어동 183-2	052-235-3634	052-236-3635
울산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울산 북구 호계동 262-2 부흥회관3층	052-291-1984	052-292-1984
울산	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울산 중구 학성동 78-6번지 3층 302호	052-281-5480	052-281-5487
울산	울주지역자활센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동백아파트 재상기 6동3층30호	052-238-5819	052-238-5820
경기	고양지역자활센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91	031-968-8378	031-968-8380
경기	광명지역자활센터	경기 광명시 광명동 273-4 한솔길 22	02-2616-7939	02-2616-1815
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	경기 광주시 송정동 120-8 2층	031-767-0768	031-767-0769
경기	구리지역자활센터	경기 구리시인동 17 농수산로도매시장 청라물동 2층 A-2호	031-569-1919	031-567-4130
경기	군포지역자활센터	경기 군포시 금정동 730-2 신호빌딩 5층	031-427-0555	031-427-0557
경기	김포지역자활센터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624-12	031-983-5171	031-986-5171
경기	남양주시지역자활센터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58-14 만복빌딩 4층	031-595-9886	031-595-9567
경기	부천·농진지역자활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협 5층	032-323-9946	032-323-9949
경기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고잔동 111-44 원진빌딩 4층	032-349-2355	032-349-2356
경기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번지 청원프라자 403호	032-654-7399	032-654-7999
경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60-20번지 2층	031-748-3500	031-743-6575
경기	성남지역자활센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279-1	031-741-0120	031-732-0121
경기	수원만남지역자활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5-13 용환BD 3층	031-231-9208	031-231-9222
경기	수원지역자활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곡동 111-59 대영BD 3층	031-232-0179	031-223-0179
경기	수원화랑지역자활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림동 637-2 1층	031-257-3991	031-257-1933
경기	시흥일곡지역자활센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13-9	031-497-7151	031-499-7294
경기	시흥직능지역자활센터	경기 시흥시 대야동 558-4 대양빌딩 6층	031-313-2733	031-315-2784
경기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	031-495-6845	031-493-9843
경기	안산지역자활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75-8 조강마을자 504-506	031-438-9506	031-438-9508
경기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경기 안성시 낙원동 68-1번지 안성시민회관 4층	031-672-5077	031-672-5057
경기	안양지역자활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676-136	031-443-1594	031-443-9911
경기	양주지역자활센터	경기 양주시 백석읍 덕정동 122-6번지	031-856-0221	031-856-0223
경기	양평지역자활센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93-25 (4층)	031-775-0454	031-773-3519
경기	여주지역자활센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 45-20번지	031-881-0871	031-881-0873
경기	오산지역자활센터	경기 오산시 궏동 668-2 다울빌 2층	031-375-3322	031-374-3399
경기	용인지역자활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9-2 씨티프라자 603호	031-8005-8038	031-8005-8037
경기	의정부지역자활센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27-23	031-879-2733	031-875-0204
경기	파주지역자활센터	경기 파주시 금능동 211-5 메트로프라자 202호	031-949-3620	031-949-3619
경기	평택지역자활센터	경기 평택시 합정동 733-19번지 3층	031-658-4788	031-658-4789
경기	포천지역자활센터	경기 포천시 근대면 구읍리 688 향군회관 2층	031-532-1978	031-532-1980
경기	하남지역자활센터	경기 하남시 덕풍2동 356-1 2층	031-791-3660	031-791-3620
경기	화성지역자활센터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리 47-3 화성남부종합복지관 내 지하층	031-354-1129	031-354-3337
강원	강릉지역자활센터	강원 강릉시 고동 934-1	033-642-4100	033-642-5816
강원	고성지역자활센터	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1	033-682-9117	033-682-9116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강원	동해지역자활센터	강원 동해시 발한동 239-1	033-535-1648	033-535-1658
강원	삼척지역자활센터	강원 삼척시 남양동 97-12 5/1	033-574-1658	033-574-1651
강원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	강원 속초시 금호동 482-5 속초시사회복지회관 3층	033-636-2891	033-636-2893
강원	양양지역자활센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5-1	033-673-4848	033-673-4849
강원	영월지역자활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6	031-373-2583	031-372-2583
강원	원주지역자활센터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223-73 원주시회복지센터 3층 301호	033-765-0945	033-765-0946
강원	인제지역자활센터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88번지	033-463-0909	033-463-0606
강원	정선지역자활센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 827-3	033-592-4115	033-592-4117
강원	춘천지역자활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3가 67-1 시민복지회관 6층	033-253-4575	033-253-4576
강원	태백지역자활센터	강원 태백시 화전동 121-2	033-553-8888	033-553-8887
강원	평창지역자활센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4-1 1층	033-332-5431-2	033-332-4585
강원	홍천지역자활센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21-1 종합사회복지관 5층	033-433-6006	033-433-0046
강원	화천지역자활센터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 20-47	033-442-0400	033-441-4438
강원	횡성지역자활센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54-4	033-345-7131	033-345-7133
충북	괴산지역자활센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56-1	043-832-1008	043-832-1009
충북	단양지역자활센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32	043-421-6911	043-421-6912
충북	보은지역자활센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1	043-543-2033	043-544-2034
충북	영동지역자활센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왕리 388-1	043-745-8481	043-745-8483
충북	옥천지역자활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옥천다목적회관	043-731-1549	043-731-1547
충북	제천지역자활센터	충북 제천시 영천동 422번지	043-648-2983	043-648-3983
충북	증평지역자활센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동리 102 증평축협 3층	043-838-9230	043-838-3406
충북	진천지역자활센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89-15	043-533-5981	043-533-5983
충북	청원지역자활센터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8	043-269-5720	043-269-5722
충북	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06-1	043-288-1432	043-288-1434
충북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67-3	043-872-8868	043-872-9228
충북	충주시지역자활센터	충북 충주시 문화동 2789 자활회관(구, 여성회관)	043-855-2800	043-855-2801
충남	공주시지역자활센터	충남 공주시 신기동 725	041-857-0029	041-857-0780
충남	금산지역자활센터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315-3	041-752-7942	041-752-7944
충남	논산시지역자활센터	충남 논산시 취암동 372-98 2층	041-734-1377	041-734-1379
충남	당진지역자활센터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118 새마을회관 204호	041-355-2882	041-355-2883
충남	보령지역자활센터	충남 보령시 동대동 1462 3호	041-936-8509	041-936-8512
충남	부여지역자활센터	충남 부여군 남면 회동리 333-2	041-832-0811	041-832-0814
충남	서산지역자활센터	충남 서산시 동문동 194-10번지 서산새마을지회 2층	041-668-2304	041-668-2311
충남	서천지역자활센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자리 888-3 동서빌딩 201	041-953-2091	041-953-2093
충남	아산시지역자활센터	충남 아산시 영지읍 송곡리 244-9 중소기업지원센터 2호	041-546-1814	041-542-1814
충남	예산지역자활센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25-1	041-332-5402	041-332-5403
충남	천안지역자활센터	충남 천안시 원성동 237-10	041-552-0350	041-552-0355
충남	청양지역자활센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5	041-942-4526	041-942-4528
충남	충남연기지역자활센터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98번지	041-868-1004	041-868-0179
충남	태안지역자활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81-1 2층	041-674-1378	041-674-1376
충남	홍성지역자활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728번지 보훈회관 1층	041-631-5815	041-631-5817
전북	고창지역자활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20	063-562-2014	063-561-2014

개소일
2011.6.3
센터장 원훈희
직원수 5명

개소일
2011.3.16
센터장 신상신
직원수 4명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북	군산지역자활센터	전북 군산시 차미동 18-11 한국빌딩 4층	063-463-9731	063-463-9258
전북	군산반야읍지역자활센터	전북 군산시 낙안1동 744-3 3층	063-446-4124	063-463-4195
전북	김제지역자활센터	전북 김제시 신봉동 48-1 한농아름공사 동진지사 별관 2층	063-544-9005	063-544-9003
전북	남원지역자활센터	전북 남원시 주생면 717-66번지	063-632-4747	063-632-4774
전북	무주지역자활센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4-2 2층	063-324-2710	063-324-2712
전북	순창지역자활센터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61	063-653-0921	063-653-0923
전북	완주지역자활센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286-5	063-232-1377	063-232-5344
전북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전북 익산시 목전동 96-4 농수산로도매시장 청라물동 2층	063-842-1460	063-842-1458
전북	익산지역자활센터	전북 익산시 평화동 33-19	063-841-1040	063-841-1061
전북	임실지역자활센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934-32	063-642-4840	063-642-4841
전북	장수지역자활센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67-19	063-351-7179	063-351-7199
전북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3-1 새만금빌딩 301호	063-583-0045	063-583-1116
전북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경원동3가 33-9 1층	063-232-8383	063-232-9712
전북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일2동 1600-6 YMCA3층	063-272-2845	063-273-2844
전북	전주지역자활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7-9 문화빌딩 3층	063-283-9766-8	063-284-9005
전북	정읍지역자활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8-54 대울빌딩 3층	063-533-0399	063-533-9929
전북	진안지역자활센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777번지	063-432-9005	063-432-9202
전남	강진지역자활센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98-2	061-434-7002	061-434-7003
전남	고흥지역자활센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49-5	061-834-0037	061-834-0039
전남	곡성지역자활센터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051-8 (구) 오곡초교	061-363-4370	061-363-4371
전남	광양지역자활센터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36-5 (4층)	061-762-9896	061-761-9896
전남	나주지역자활센터	전남 나주시 영산동 75-3 (구)영산동사무소	061-333-8890	061-333-8891
전남	담양지역자활센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82-3	061-383-9909	061-383-9912
전남	목포지역자활센터	전남 목포시 강동 1가 8-1	061-242-0003	061-242-7330
전남	무안지역자활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79 3층	061-452-6225	061-452-6229
전남	보성지역자활센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754-8	061-857-4664	061-857-4665
전남	순천지역자활센터	전남 순천시 남정동 338-8	061-744-3825	061-744-3845
전남	신안지역자활센터	전남 목포시 용해동 236-5번지	061-272-6788	061-272-6787
전남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전남 여수시 안산동 434-6번지	061-663-8378	061-663-8376
전남	여수지역자활센터	전남 여수시 공화동 1299	061-662-4402	061-662-4403
전남	영암지역자활센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동리 204-4	061-471-9933	061-471-9934
전남	완도지역자활센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향동리 307-5	061-554-1001	061-554-8001
전남	장성지역자활센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43구 상산복지회관	061-394-0072	061-394-0021
전남	장흥지역자활센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총말리 122읍성로 71	061-862-8266	061-862-8267
전남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52-4	061-353-2000	061-351-2054
전남	진도지역자활센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80	061-542-6900	061-542-6902
전남	함평지역자활센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96-4	061-323-9556	061-323-9558
전남	해남지역자활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67-2	061-532-0043	061-532-0064
경북	경산지역자활센터	경북 경산시 방방동 889-4 동헌빌딩 2층	053-811-5444	053-811-6632
경북	경주시지역자활센터	경북 경주시 황오동 330번지	054-771-6694	054-772-6694
경북	고령지역자활센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자산리 17-1	054-955-8322	054-955-8323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경북	구미지역자활센터	경북 구미시 원평2동 45-1	054-455-2134	054-455-2135
경북	군위지역자활센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하곡리 산 35-4번지	054-383-6900	054-383-1218
경북	김천지역자활센터	경북 김천시 다수동 422-11 2층	054-435-8985	054-435-8986
경북	문경지역자활센터	경북 문경시 점촌동 289-1 3층	054-554-0408	054-554-0409
경북	봉화지역자활센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75-1 (2층)	054-672-4185	054-672-4187
경북	상주시지역자활센터	경북 상주시 남성동 50번지	054-536-6580	054-536-6582
경북	성주지역자활센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33-1 상일웨딩빌딩 2	054-931-1370	054-931-1391
경북	안동지역자활센터	경북 안동시 옥동 984-15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054-841-5120	054-853-5121
경북	영덕지역자활센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280번지	054-734-5884	054-734-0043
경북	영주시지역자활센터	경북 영주시 하림동 322-18	054-635-5030	054-636-0583
경북	영천지역자활센터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5-10	054-337-1919	054-337-1920
경북	예천지역자활센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96-25 4층	054-655-8217	054-655-8218
경북	울진지역자활센터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산리 27-1	054-781-4555	054-781-4556
경북	청도지역자활센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 8리 969-13	054-371-6765	054-371-6766
경북	칠곡지역자활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292-1번지	054-971-3335	054-971-3337
경북	포항·농진지역자활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517-3	054-252-4471	054-252-6423
경북	포항지역자활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3-7 선재빌딩 2층	054-249-0863	054-249-0867
경남	거제지역자활센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 136-2번지 3층	055-688-5890	055-688-5490
경남	거창지역자활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8-4번지 2층	055-942-9978	055-944-1974
경남	고성지역자활센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055-674-2001	055-672-0973
경남	김해지역자활센터	경남 김해시 외동 128-3 김해보건복지센터 별관 305호	055-329-6370	055-329-6372
경남	남해지역자활센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80번지	055-864-6672-3	055-864-6613
경남	마산지역자활센터	경남 마산시 석전동 274-8	055-251-0650	055-252-0875
경남	마산합포지역자활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151-5	055-247-7045	055-247-7068
경남	밀양지역자활센터	경남 밀양시 내리동 1554-8	055-356-9867	055-356-7473
경남	사천지역자활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1	055-855-0422	055-855-0433
경남	산청지역자활센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244-5	055-973-8267	055-973-8269
경남	양산시지역자활센터	경남 양산시 북부동 533 양산종합운동장 166-1호	055-387-3147	055-384-3147
경남	진주시지역자활센터	경남 진주시 평거동 399-1	055-747-0179	055-747-2197
경남	진해지역자활센터	경남 진해시 봉호동 1번지 진해시종합사회복지관	055-540-0200	055-540-0201
경남	창녕지역자활센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74-4번지	055-532-0624	055-532-8992
경남	창원지역자활센터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종합운동장 149-1호	055-262-2772	055-275-2984
경남	통영지역자활센터	경남 통영시 도천동 322 도천APT 상가 2층	055-649-1649	055-649-1648
경남	하동지역자활센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50-5	055-884-6955	055-884-6957
경남	함안지역자활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9-1 함안공설운동장 220호	055-584-0455	055-584-0457
경남	함양지역자활센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44-9	055-963-0144	055-963-7554
경남	함천지역자활센터	경남 함안군 함천읍 함천리 524-1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933-3227	055-933-3226
제주	서귀포읍지역자활센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로리 566	064-792-8219	064-792-8220
제주	서귀포시농진지역자활센터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1579-1	064-738-8219	064-738-8221
제주	이여도지역자활센터	제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15	064-772-1297	064-772-2435
제주	제주시농진지역자활센터	제주 제주시 오라 1동 1163-4 야구장 2층	064-722-8219	064-723-8219
대구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64	053-644-1080	



글 • 김홍수영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사회적배제연구센터 박사 과정

김홍수영은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하고 있으며, 불평등, 사회적 배제 및 시민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다. 현재 사회복지정책의 정부와 시민단체 파트너십에 관한 박사 과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3세계의 워크페어 인도의 MNREGA 프로그램

제3세계에도 워크페어가 있을까? 제3세계의 워크페어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자활사업이나 워크페어(workfare)를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정책은 대부분 서구의 빈곤정책이다. 학자나 정책가가 해외의 정책 동향으로 소개하거나 연구하는 정책도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복지제도일 때가 많다. 그러나 빈민에게 노동을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워크페어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정책 트렌드다. 특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농촌고용보장정책(MNREGA: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워크페어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인도의 MNREGA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 공간 : 농촌 중심의 워크페어

한국과 서구에서 워크페어는 대부분 ‘도시 빈민’을 겨냥한 대책에서 출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워크페어인 TANF나 WEP는 도시 할렘에 살고 있는 장기실업자나 한부모가정,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자활사업도 마찬가지다. 자활사업의 원형으로 알려진 ‘생산자협동조합’은 도시의 판자촌이나 빈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생산공동체를 조직하려 했던 도시빈민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를 겪으면서 농촌의 노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대도시에 거대한 근로빈민층이 형성되었다. 이농한 도시빈민들은 농촌에 남겨진 노년층과는 달리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많았지만, 대부분 기술과 학력이 낮아서 노점상이나 낱품팔이와 같은 2차 노동시장과 실업상태를 반복해야 했다. 생산자협동조합운동은 이러한 도시빈민층에게 좀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빈민운동단체들의 노력이었다. 1999년에 제도화된 자활사업도 도시빈민층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대한 안전망 기능을 담당해 왔다. 도시의 근로빈민층(working poor)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

인도 : MNREGA 프로그램



이 불경기에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다. 때문에 비록 자활사업이나 근로소득세감면대책(EITC)과 같은 워크페어가 모든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실질적인 초점은 도시빈곤층에게 쏠려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 제3세계에서 워크페어는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과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의 농촌에는 여전히 근로연령대의 빈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인도도 예외는 아니다. 2006년 기준으로 전체 빈곤층의 75%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삶은 도시빈민과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도시의 경우 93%의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고 85%의 가구가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농촌의 경우는 56%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25%에 불과하다. 낙후지역에 있는 60만 개의 마을 중에 콘크리트 도로가 있는 마을은 2만여 개에 불과하고, 은행은 20여 개 마을에 1개, 상점은 6개 마을에 1개, 우체국은 5개 마을에 1개, 병원은 42여 개 마을에 1개 정도만 존재하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 자라는 아동 중 41%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5분의 1 미만일 뿐이다. 때문에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빈곤정책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마하트마 간디 농촌고용보장정책(MNREGA)’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듯이, 인도의 MNREGA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민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8월에 제정된 정책이다. 도시빈민층의 실업이 금융 및 산업자본의 흐름이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 실업’이라면, 농촌빈민층의 실업은 계절의 흐름을 타는 ‘계절적 실업’이다.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한기에 들어서면 일자리가 격감하게 된다. 때문에 건장한 남성 농사꾼을 제외한 소작농이나 여성은 농한기에 일자리를 대거 잃게 되는 것이다. MNREGA는 정부가 농한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임시로 공공근로 사업을 만들어서 농촌에 사는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러한 노동을 대가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트나 지역(Patna) MNREGA 노동자들이 홍수방지 둑을 만들고 있다.
출처 : <FRONTLINE>, 2009년 1월
(제 26권 1호)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들에는 과거 한국의 취로사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다. 예를 들어, 도로, 수로, 다리 건설, 장마 및 가뭄 예방, 경작지 개간, 나무 심기, 풀 뽑기와 숲 가꾸기가 그것이다. 농촌 빈민들은 이와 같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일일 최저임금인 120루피(2.66달러, 2009년 기준)를 일당으로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일당 2.66달러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인도 정부가 MNREGA에 투자하는

총예산은 엄청나다. 2007년에는 총 정부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연간 40억 달러를 투자했고, 2011년 현재에는 80억 달러로 그 비율이 두 배로 늘었다. 매년 남한의 인구와 맞먹는 4천만 가구(인도 농촌인구의 25%)가 MNREGA가 제공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 하다.

2. 대상 : 계급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워크페어

개발도상국의 워크페어는 지역만이 아니라 정책대상에 있어서도 서구의 워크페어와 차이가 있다. 보통 서구의 워크페어가 저소득층 개인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MNREGA는 빈곤을 '계층 사이의 차별'과 '낙후된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모든 사회에 빈부격차가 존재하지만 인도만큼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가 확연히 구분된 나라도 드물다. 인도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 기반을 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스트의 최하계층인 불가촉천민(untouchable)의 경우나 사별과 이혼으로 혼자 남게 된 여성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MNREGA는 공공근로 사업들에 이러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 라자스탄 지역(Rajasthan)을 예로 들었을 때, MNREGA 참여자 중 약 70%가 여성이며, 46%는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수 부족들이고, 불가촉천민도 19%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노동시장에서 처음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정부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저임금(60루피, 2009년 기준)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남녀노소와 귀천을 불문하고 법정최저임금(120루피)을 보장하는 MNREGA는 획기적인 복지혜택이 아닐 수 없다. 세습계급의 폐단을 완화하려는 정책의 목표는 2009년 10월에 정책 명칭을 '농촌고용보장법'에서 인도에서 평등과 정의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이름을 따 '마하트마 간디 농촌고용보장법'으로 바꾼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MNREGA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빈곤탈출의 단위를 개인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했듯 제3세계에서 워크페어는 농촌개발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이 공공근로를 통해 구매력을 회복하고 농가의 가계가 안정되면, 무분별한 이농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정부는 625개 지역구에 산재해 있는 마을회의(Gram Sabhas)에서, 도로 건설, 가뭄 및 장마 대비 둑 건설과 같이 농촌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 사업 아이템을 직접 선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촌마을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마을주민들의

MNREGA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출처 : 〈Economist〉, 2008년 4월 24일



한국의 새마을운동
출처 : 〈월간 조선〉, 2006년 12월 15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MNREGA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상당히 많이 닮아있다.

물론 MNREGA는 '지역개발정책'인 새마을운동과 달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MNREGA 사업에 참여하는 빈민들을 심사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선정하고, 노임을 대신하여 일일이 생계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활사업과 마찬가지로 빈민이 MNREGA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 동사무소(Gram Panchayat)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마을 동사무소에서 자산과 노동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참여자의 사진이 부착된 근로카드(Job Card)를 발급받게 된다. 정부는 근로카드는 신청자의 신청 이후 15일 이내에 발부해야 하며, 카드소지자는 MNREGA가 제공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 중심의 공공근로

로 사업이라는 원칙에 따라 카드소지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반경 5k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공근로에 배치 받을 권한이 있고, 5km를 벗어난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최저생계비의 10%를 교통비 및 추가 비용으로 더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카드 발부 후 15일이 지나도록 공공근로 사업에 배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실업수당(unemployment allowance)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3. MNREGA의 성과와 문제점

MNREGA는 아직 시행된 지 5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정책이라 그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인도의 정치 경제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획기적인 빈곤정책으로 평가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보다는 성과가 낮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선 MNREGA가 받는 가장 큰 찬사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제도를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이다. 2005년 MNREGA가 입법화되기 이전에 정부가 주관하는 취로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8년 한국의 자활근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취로사업이 한시적이고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인도의 공공근로 사업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인도의 지방정부의 부정부패가 무척 심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재정을 투자해도 이를 지역정치인과 유지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고작 복지예산의 15%만이 실질적으로 빈곤층에게 도달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Right to Food Campaign'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근로 사업의 입법화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MNREGA가 탄생했다.

제도화된 MNREGA는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막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로카드를 발급받은 지 15일 이후에도 일자리를 할당 받지 못할 경우에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들여 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한 조항이 그것이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을 때에는 지방정부가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게 예산을 할당 받은 후에, 공공근로 사업을 개설하지 않고 그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MNREGA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방식의 부정부패

MNREGA 근로카드를 들고 있는 공공근로 참여자들
출처 : 〈rediff.com〉



는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실질적인 정책집행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여전히 잔존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뇌물을 받고 근로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지방정치인과 공무원이 유령 근로카드를 발급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 근로에 참여를 했는데도 지방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서 자신의 노임을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복지예산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일선기관의 비리는 인도의 MNREGA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방행정과 복지시스템의 투명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복지행정체계가 갖추어진 한국의 경우, 공무원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불법적인 등록을 돕고 뇌물을 받거나, 참여자의 생계비를 중간에 횡령하거나, 유령 수급자를 만들어 생계비를 빼돌리는 사건들은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하기 위해 지역정치인이 공공근로 사업을 늘리는 경우처럼 자활사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지만, 노골적인 공금횡령과 같은 행정상의 비리는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때문에 어떤 이는 인도의 MNREGA을 보고 과거 한국의 새마을운동처럼, 못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후진국의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자활사업의 미래의 청사진으로 서구의 워크페어를 무분별하게 답습하는 태도만큼, 제3세계의 농촌고용대책을 과거의 추억거리로 보는 시각도 단선적이긴 마찬가지다. 인도의 MNREGA, 한국의 자활사업, 서구의 워크페어가 동시대에 시행되고 있는 워크페어니만큼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4. MNREGA가 한국의 자활사업에 주는 시사점

사실 인도의 MNREGA와 한국의 자활사업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비난을 받아왔다. 빈곤에 대한 변혁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진보진영은 MNREGA와 같은 워크페어가 빈곤문제의 변죽만 울리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해왔다. 앞에서 말했듯이 MNREGA는 ‘정의와 평등’을 중요한 목표로 꼽는 등 빈곤의 구조적인 차원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농촌마을에 도로, 독, 도랑을 건설하고 수리하는 일만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빈부격차가 본질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과거 새마을사업이 농촌을 근대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한국사회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절대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켰던 일등공신은 수출지향정책이나 중화학 공업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산업정책이었다. 이러한 실례를 봤을 때 MNREGA는 단지 농한기에 유희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자연재해에 응급처치를 하는 수준의 도움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평가다. 실제로 MNREGA가 시행된 이후에도 농촌의 빈곤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들의 비판을 뒷받침해 준다. 사실 한국이든 인도든 워크페어는 빈곤과 불평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불평등하게 구성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는 계층에 대한 사후적인

‘안전망’으로 설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워크페어를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와 반대로 보수진영에서는 MNREGA가 빈민들을 국가복지에 의존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사람들이 MNREGA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를 더 선호한 나머지 일반노동시장에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수진영은 MNREGA에 투자되는 정부예산은 점차 늘어갈 수밖에 없고, 일반노동시장도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임금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복지의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2차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불가촉천민이나 여성들은 될 수 있으면 MNREGA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진보진영은 워크페어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 반대로 보수진영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 워크페어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좌우의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을 넘어서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현재의 워크페어는 어떠한 유익을 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사실 MNREGA에 비판적인 좌파나 우파의 학자들과 달리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빈민들의 96%가 MNREGA를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MNREGA가 유익한 이유로 빈민들이 손꼽는 점은 단지 공공근로가 ‘음식을 주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36%)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경제적인 유익이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공공근로와 같은 공동체적 사회생활이 사회적 배제계층이 겪고 있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는 등 심리사회적 차별을 완화시키는 효과(26%)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빵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워크페어가 심리적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Ravi and Engler 2009).

이러한 예기치 못한 부수효과는 한국의 자활사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득은 생계비나 일자리만은 아니다. 여성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사별, 남성 수급자의 경우는 중독과 질병과 같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자활지원센터에서 만나게 되면서 정신적인 위안과 도움을 받는 일이 매우 흔하다. 또한 자활사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빈곤(time poverty)을 해소하는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경비, 24시간 편의점, 건설노동처럼 새벽이나 불규칙적으로 일해야 하는 2차 노동시장의 직업들과 달리, 자활근로사업단은 규칙적으로 일일 8시간 낮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만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은 임금이 다소 적다고 해도 자활근로를 선호하기도 한다. 미국의 워크페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가장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비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할 때 받는 일당보다 낮더라도, 안정적인 일거리를 보장하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워크페어에 머무르길 원하는 여성이 많다(Edin and Lein 1997). 다시 말해, 워크페어의 일자리는 빈민들의 경제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글 • 엄형식
리에쥬대학
사회적 경제센터 박사과정

엄형식은 춘천자활후견기관, 강원자활후견기관협회, 자활정보센터에서 일했으며, 현재 벨기에 리에쥬대학 사회학과 박사 과정으로 있으면서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와 사회 운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 사회의 지원 도구들 1

-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과 대안 금융 크레달

벨기에에서 노동 통합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 일반의 발전은 시민 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노력들과, 우호적인 정치 환경에 비롯한 시의적절한 제도화가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홀홀단신 자력에 의지해서만 등장하고 발전한 것은 아니며, 노동 운동, 농민 운동, 카톨릭 교회 등 다양한 시민 사회 연결망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원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초기 설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시민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원 도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노동 통합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 일반에 있어서 시민 사회 내부의 우호적인 생태계가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전문적인 지원 도구들인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과 대안 금융 기관인 크레달(Crédal)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그룹 방식과 연합체 방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우호적인 조건을 조직하는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Agence conseil en économie sociale)

벨기에에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주요하게 사회주의 계열 정치 운동과 노동 운동, 카톨릭 계열 정치 운동과 노동 운동 및 농민 운동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개별적인 협동조합과 민간단체들은 고립적으로 등장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노동조합 및 정당 조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조직되고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의 전신은 이들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및 정치 운동 조직들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하에서 살펴볼 벨기에 왈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 10개 중 3곳은 사회주의 계열 협동조합 연합체, 카톨릭 계열 협동조합 연합체 그리고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등장하기



MNREGA나 자활사업, 그리고 TANF와 같은 빈곤정책이 갖는 의도치 않은 ‘비경제적인 효과’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제기하고 있는 빈곤정책 무용론을 재고하게 만든다. 보수진영의 주장처럼 빈민들이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공공근로가 충족시켜주는 비경제적인 욕구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경제구조의 일대 전환은 아니더라도 빈곤대책이 개인의 사회적 삶을 변화시키고 배제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5. 워크페어를 뛰어넘는 빈곤대책의 대안들

이러한 사실은 근로연령대의 빈민들을 위한 정책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바로 비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들이 그것이다. 실제로 빈곤정책의 시행착오와 연구를 통해, 소득의 향상이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아무리 가난한 빈민들이라 할지라도 생계가 삶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를 가장 빨리 체감하고 활동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일선에서 워크페어를 집행하는 실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미국에서는 클레멘트 코스(Clement Course)가, 한국에서는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인문학이, 그리고 인도에서는 빈곤여성의 역량강화와 의식화를 위한 ‘여성 평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Mahila Samakhya: Education for Women’s Equality)’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한국에 널리 알려진 클레멘트 코스나 희망의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Mahila Samakhya 또한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닌 비판의식과 조직화를 고양하는 프레이리식 페다고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은 ‘일을 통한 빈곤대책(work-first approach)’을 넘어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저소득층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경제결정론적인 시선으로 빈곤을 바라보았던 좌파와 우파의 사고의 지경을 뛰어넘고 있다. 이처럼 비록 미국, 한국, 인도의 경제수준과 역사적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경제 중심의 빈곤대책에 대한 한계에 공감하며 비슷한 대안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워크페어 열풍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는 보조 프로젝트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ahila Samakhy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들
출처 : Mahila Samakhya 공식 홈페이지



참 고 문 헌

- | | | |
|--|--|--|
| Edin, K., and L. Lein. 1997. <i>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i> : Russell Sage Foundation Publications. | O’Keete, P. 2005. <i>Workfare programs in India and Internationally: Note on issues and experience</i> : New Delhi World Bank Office. | Edin, K., and L. Lein. 1997. <i>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i> : Russell Sage Foundation Publications. |
| Gupta, A., and A. Sharma. 2006. Globalization and postcolonial states, <i>Current Anthropology</i> 47 (2):277-307. | Ravi, S., and M. Engler. 2009. <i>Workfare in Low income Countries: An effective Way to Fight Poverty? the Case of NREGS in India</i> :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 Ravi, S., and M. Engler. 2009. <i>Workfare in Low income Countries: An effective Way to Fight Poverty? the Case of NREGS in India</i> :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

시작한 1980년대부터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조직들이 함께 등장했으며, 초기에는 자원 활동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활동이 점차 체계화되면서 컨설팅 기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벨기에 왈론 지방 정부는 1996년부터 이들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컨설팅 기관으로 인정하였고, 2004년부터는 시장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컨설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현재 벨기에 왈론 지역에는 2004년 법령을 통해 인정을 받은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 10개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3개 연합 조직과 아래에서 살펴볼 대안 금융 조직인 크레달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들은 2007년 연합 조직인 ApacES를 설립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다.

1)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의 정의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에 관한 2004년 법률에서는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을 ‘기본적인 지위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재단, 사회적 목적 기업 또는 전국협동조합평의회에 의해 인정된 협동조합¹⁾의 지위를 가지고 서비스의 최소 절반 이상을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²⁾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은 이들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창업 및 전환, 그리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2)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들의 활동은 주로 창업 및 발전에 관련된 컨설팅, 법률 및 행정 관련 서비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먼저, 창업 및 발전에 관련된 컨설팅에서는 사업의 목적, 조직 구조, 재정 계획, 법률적 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 대상 조직의 목적에 따른 예산 계획 수립, 대상 조직에 필요한 재무 경영 지원,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 실행 지원, 재정 충당을 위한 서류 작업 지원 및 후속 작업, 경영에 대한 감사, 마케팅 관련 컨설팅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법률 및 행정 서비스로는 대상 조직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및 검토, 대상 조직의 해산, 청산 또는 전환에 관련된 사항, 근로 계약 및 사업 계약 관련 사항, 수행한 활동에 대한 법률적, 재무적, 사회적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기타 서비스로서 인사 관리에 대한 컨설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컨설팅, 홈페이지, 로고, 각종 선전 홍보물 제작 지원, 노무 관리 관련 행정사항 대행, 이벤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3)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 인증

2004년 법령에 따라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왈론 지방 정부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11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선행 지위로 비영리민간단체, 재단, 사회적 목적 기업, 전국협동조합평의회 인증 협동조합 또는 관련 정책에 의해 인정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 ② 사회적 목적으로서 컨설팅을 받는 조직들의 50% 이상이 시장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 ③ 주사무소가 벨기에 왈론 지방에 소재해야 한다.
- ④ 주요 활동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사례관리 지원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지원³⁾(민간단체나 일반 기업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 포함. 또한 기존 조직 내부에 신설 사업 부문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인정), 창업(또는 전환) 이후 최장 2년까지 사례관리 지원
 - 사업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진로 상담(적절한 곳으로 의뢰 포함)
 - 전문적인 분야에 관련된 상담 제공
 - 활동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
 -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재정 확보를 위한 지원
 - SOWECSOM(왈론 지역 시장 활동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투자 공사)과의 협력
- ⑤ 2년의 활동 경력에 대한 증명과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4번 조항에서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한 5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⑥ 다른 활동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회계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⑦ 회계, 법률, 재무, 행정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중 최소 3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 ⑧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상담 수혜자 명단, 상담 관련 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⑨ 신청 단체가 강제 조정, 파산 등의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⑩ 신청 단체의 이사진과 경영진에 중대한 범죄 경력자가 없어야 한다.
- ⑪ 신청 단체가 사회보험 및 세금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한다.

이상의 11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여 신청서를 왈론 지방정부에 제출하면서 부속서류로 조직의 정관, 사업 계획서, 홍보 계획서, 인적 자원 운용 계획서, 향후 4년 동안의 재무 계획,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약서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게 된다. 신청 후 인증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서 인증을 승인하게 된다.

한번 인증이 되면 3년간 유효하고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첫 1년 동안 임시 인증 상태에 있게 되며, 1년 후 문제가 없으면 3년의 인증 기간이 정식으로 시작된다.

4)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고객으로부터 지불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왈론 지방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지원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의 개념으

1) 벨기에는 매우 유연한 협동조합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업 형태의 모든 경제 활동이 협동조합으로 가능하다. 협동조합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법률 때문에, 벨기에는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들이 전국협동조합평의회(Conseil National de la Coopération)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국협동조합평의회에 의해 인정을 받은 협동조합만이 전통적인 의미의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500여개의 협동조합 연합체와 개별 협동조합들이 전국협동조합평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2)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재정의 50%이상을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조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보조금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구분하기 위해 벨기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주로 사회적 목적 기업, 협동조합, 노동 통합 등의 사회적 기업들을 가리킨다.

3) 고객과 창업 계획을 추진했으나 결국 창업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근거 서류에 의해 창업 상담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로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고정된 보조금은 매년 32,000유로가 지원된다. 고정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들은 시장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실적과 연계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먼저 사업 계획을 가지고 방문한 대상자들 중 보다 적절한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킨 경우가 30%이면 3,000유로, 50% 이상이면 5,000유로의 추가 보조금이 나온다.
- ② 컨설팅 대상자의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을 했을 때, 해당 경우가 3건이면 3,000유로, 6건이면 6,000유로, 9건이면 9,000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 ③ 창업, 전환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상담을 받은 조직이 6개면 6,000유로, 10개면 10,000유로, 15개면 15,000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사후 관리가 2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한 조직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컨설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 10개당 1,000유로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장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면 한 기업당 최대 40시간, 시간당 60유로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보조금들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재정을 확보하는 계획서를 세우면서 2)창업을 하여 3)10명을 고용했다면 3가지 사항에 관련된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을 많이 할수록 무한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보조금은 첫 해에 10,000유로, 둘째 해에 20,000유로 셋째 해에 30,000유로로 총액의 제한을 받는다. 3년이 지나면 인증이 갱신되면서 다시 1년차 10,000유로, 2년차 20,000유로, 3년차 30,000유로의 최대 한도를 인정받게 된다. 보조금은 1년에 5번 나누어 정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5) 구체적인 운영 사례 - 아제스(AGES, www.ages.be)

1985년에 설립된 아제스는 초기에는 리에쥬 스텝 거리(rue de steppes) 일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출발했으며, 1993년 비영리 민간 단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스텝 거리 외부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96년에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으로 왈론 지방 정부에 의해 인정되었으나, 2006년에 이르러 새로운 제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으로 다시 인증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아제스는 다른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보조금 지원 없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컨설팅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을 충당하고 발전해 온 시민 사회 기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아제스의 고객은 시장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외에도 중소기업, 개인 자영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시장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컨설팅 활동만이 보조금의 대상이 된다.

① 아제스의 목적

아제스의 활동 목적은 고객의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 설정을 돕고,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 주며, 이에 따른 발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제스는 사례관리, 맞춤형 컨설팅, 능력 배양, 재원 발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 경영 자문, 웹사이트 및 인쇄물, 재원 발굴, 훈련, 공간 임대 등을 제공한다.

② 아제스의 활동

아제스의 컨설팅은 상담자의 철학과 필요에 따라 시장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자영 창업의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상담자와의 초기 상담 후 상담자에게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의 경우는 창업 지원 계약을, 특정한 사안의 경우 관련 컨설팅 계약을 맺게 된다. 아제스가 충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단체나 조직으로 의뢰를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도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

시장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컨설팅은 1년 평균 5~7건을 수행하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2009년 35건을 진행하였다. 자영 창업에 대한 지원은 Step by Steppes라는 이름의 창업보육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개인들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개별적인 지원뿐 아니라 창업 준비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교류, 공간 대여 등의 집합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상담 비용은 일반 기업의 컨설팅 보다 낮은 편이다. 창업 전반에 관련된 포괄적인 컨설팅의 비용은 2,500유로 정도이며, 이외에도 법률 상담, 경영 상담, 인쇄 출판 등에서 매우 세분화된 서비스 내역과 가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방문단의 아제스 방문 시 기관 설명을 하는 컨설팅 담당 카롤린 조리씨 (2010. 11)
출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현재 실무자는 법률 전문가, 품질 관리 전문가, 경영학 전공자, 디자인 전문가, 회계 등 기능을 가진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제스는 ISO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왈론 지역 10개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 중에는 유일한 경우이다.

2. 대안 금융 크레달(Crédal, www.credal.be)

예금자들이 자신들의 예금이 보다 사회적이고 연대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정한 연대 금융 조직에 예금을 예치하는 연대 예금은 프랑스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연대 예금 및 연대 금융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다. 반면 벨기에에서 연대 금융은 기존 은행들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시켜 온 연대 예금 상품을 통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온전한 의미의 연대 금융으로는 벨기에 불어권 지역에서는 크레달이 유일하다. 하지만 크레달의 오랜 역사와 폭넓은 활동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크레달을 중심으로 발달한 벨기에의 연대 금융/대안 금융 운동은 무시할 수 없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대안적(alternative)인 신용(credit)을 의미하는 크레달(Crédal)은 198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벨기에에서 진행되었던 ‘아파르트헤이트 은행’ 운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던 벨기에 은행들에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비판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 예금의 사용에 관련된 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일군의 예금자들이 예금의 일부를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윤리적 예금을 운용하기 위해 1984년 ‘Justice et Paix(정의와 평화)’와 ‘Vivre Ensemble(더불어 살아가기)’라는 두 단체가 함께 협동조합 형태의 크레달을 만들게 되었다. 크레달에는 2009년 말 현재 1,482명의 투자자 조합원이 있으며⁴⁾, 4곳의 지역 사무소에 32명의 실무자, 75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1) 법적 형태로서의 협동조합

투자자 클럽이나 예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준금융 기관의 지위를 가진 프랑스의 연대 금융 조직들과 달리 크레달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적 지위에서 나온다. 크레달은 전국협동조합평의회의 인증을 받은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출자 형태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크레달의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12명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예금자 조합원과 이용자 조합원으로 구분되는 조합원들은 모두 총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예금한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의해서 의결권이 부여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중 100여 명의 적극적인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주요

한 사항들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조합원들은 출자를 한 후, 이사회에 소개되며 정관과 내부 운영 규칙에 대해 동의를 하는 서명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 조합원이 되면 매년 활동 보고서를 받게 되고, 4개월마다 발간되는 소식지 ‘Crédialogue’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총회 참석을 요청받게 된다.

2) 자금의 조달 - 조합원 출자

크레달은 협동조합으로서 일반 은행과는 다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은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을 납부한다. 출자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된다.

[표 1] 크레달의 출자금 종류

건설자(Bâtitseur) 출자 : 100유로	가장 기본적인 출자 형태로서 배당금은 별도로 없으며, 탈퇴할 때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게 된다.
투자자(Investisseur) 출자 : 500유로	투자자 출자 역시 배당금을 별도로 받지 않으나 탈퇴할 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미노(Domino) 출자 : 매월 10유로	조합원들이 큰 부담 없이 매월 10유로씩 출자를 하는 방식이며, 조합원이 원할 때까지 출자금 불입을 할 수 있다. 투자자 출자와 마찬가지로 탈퇴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한 달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매월 최대 2,500유로 한도에서 가장 6개월에 걸쳐 분할 환급된다. 이는 크레달의 현금 흐름에 급작스러운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2009년 현재 조합원들의 출자금 규모는 10,723,926.77유로이며 기타 투자 기금을 포함한 총 기금은 13,717,591.28유로이다. 크레달 자체 기금 중 2009년 말 현재 84.4%가 신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운영비는 이자 수익, 프로젝트, 유럽연합 및 정부의 보조금, 은행 등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반면 대출금에 대해서는 외부 지원이나 보조금이 없다. 크레달은 대출 프로그램 이외에 앞서 살펴본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활동과 여성 창업 지원 교육 과정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자금의 운용

조합원들에 의해 출자된 돈은 은행에서 신용을 얻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 자영업자, 개인의 3가지 유형의 대상층에 맞추어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된다.

① 연대 금융(crédit solidaire) 프로그램

설립 시기부터 크레달의 주요한 활동이었던 연대 금융 프로그램은 민간단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

4) 참고로 조합원은 매년 평균 150여 명씩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반대로 30여 명이 탈퇴를 하고 있다.

업들에게 2,500유로에서 400,000유로 사이의 금액을 대출하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연대 금융 프로그램

대출 형태와 기간	용도	연간이자율
장기 투자 대출 (최대 20년)	부동산 및 건물 매입	4.75%
중단기 투자 대출 (3~7년)	차량이나 대형 장비 구입, 리노베이션, 사업장 정비 등	5%
운전 자금 대출 (1~10년)	프로젝트의 개발이나 활동의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자체 기금 확충 필요에 부응	5%
긴급 운용 대출 (1~18개월)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필요한 긴급한 자금 운용을 위한 대출	5.5%
단기 현금 유동성 대출 (1년, 갹신 가능)	현금 유동성의 일시적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에 대응	6%

연대 금융의 대출 조건은 프로젝트의 타당성, 대출 상환 능력,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재무 구조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며, 신청 단체와 프로젝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고용 안정 (또는 창출) 효과, 수익이 아닌 연대 추구, 활동의 다양한 효과, 사회적 소외에 대한 대응,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성격, 양질의 경영 능력, 의사 결정에 민주적인 참여 구조 투명성 등을 대출의 기준으로 검토한다.

2009년에는 149건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진행 중인 대출은 13,161,300유로이다. 대출의 대상이 되면, 대출자들은 최소 25유로의 출자금을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투자자 조합원들과 대출자 조합원들의 연대를 위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요구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② 마이크로크레딧(microcrédit)

크레달은 2000년부터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참여 재단(Fonds de Participation)과 함께 운용하는 ‘연대 대출(prêt solidaire)’과 크레달 자체 기금으로 운용하는 ‘MC2’의 두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내용	연간이자율
예비창업자	투자 소액 금융	- 최대 12,500유로. - 재고 구입, 초기 재정 확충, 신용 보증 및 광고 등에 소요되는 투자 - 대출 기간 : 최장 4년	5%
	재무 소액 금융	- 최대 10,000유로 - 운전자금으로 활용 - 대출 기간 : 1년 (갱신 가능)	8%
자영업자	발전 소액 금융	- 사업 확장 용도 - 대출 기간 : 4년 또는 7년	5%
	재무 소액 금융	- 최대 10,000유로 - 운전 자금으로 활용 - 대출 기간 : 1년 (갱신 가능)	8%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방문단의 아제스 방문 시 기관 설명을 하는 컨설팅 담당 카롤린 조리씨 (2010. 11)
출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신청 가능한 대상층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소규모 기업 창업을 위한 건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75,000유로 정도 규모의 사업(계획)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출 조건으로는 처리 비용과 보증 기금 가입에 따른 비용 납부(대출 금액의 5%),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대출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에 125유로의 비용 지불, 대출 이후에 크레달을 통한 사후 관리 등이 제시된다.

2000년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은 2009년까지 472건에 대해 3,720,373유로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2009년 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액은 1,279,603유로이다.

③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대출(crédit social accompagné)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대출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개인들에 대해 500유로에서 10,000유로 사이의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주요하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 구입이나, 점포 개보수, 교육 훈련 등의 용도에 대해 대출이 되며, 이자율은 5%이다. 또한 2008년부터는 브뤼셀 지역 주민에 국한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개보수 및 에너지 효율형 난방 교체를 명목으로 저소득층 녹색 대출(prêts verts sociaux)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 금액은 500유로에서 20,000유로 사이이며, 이자율은 0%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대출은 2009년까지 1,117명에게 3,515,507유로의 대출이 승인되었고, 이중 2009년 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액은 1,343,185유로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녹색 대출은 2009년까지 108건 613,959유로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2009년 현재 381,813유로가 운용되고 있다. 🇧🇪



글 • 안미현
중앙자활센터 사업교육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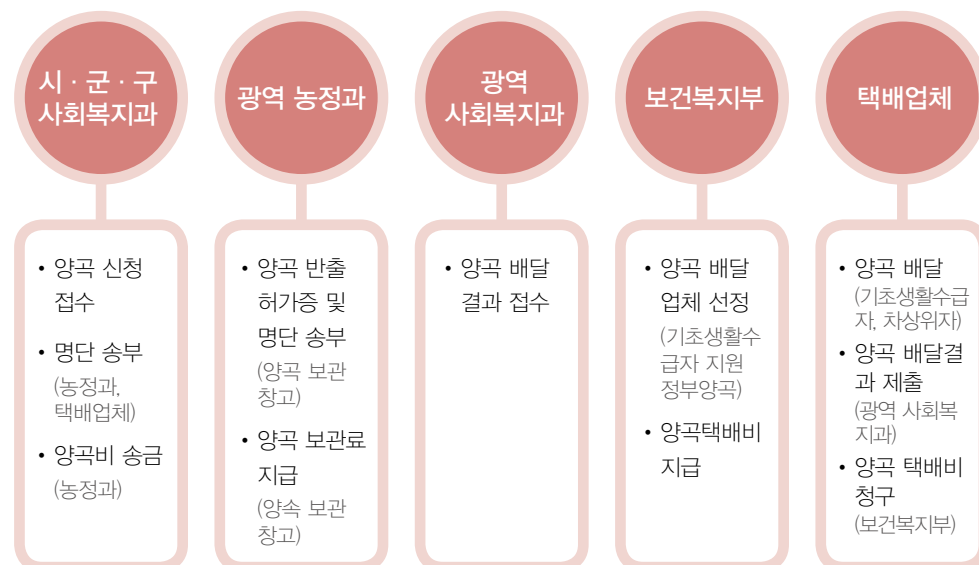


2011년 신규사업 정부양곡배송사업 소개

1. 주요 사업 내용

정부 양곡 배송 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시중가보다 할인해서 판매하는 정부 양곡(나라미)을 자활배송사업단 및 자활공동체가 배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지원하는 양곡은 연간 500만 포인데 정부 양곡을 수급자 및 차상 위자 가정에 배달하여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¹⁾

[그림 1] 정부 양곡 배송 관련 기관별 주요 역할



1) 1차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23개 센터의 경우 자활 사업단(또는 공동체) 23개 설립 및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향후 전체 물량을 자활 사업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단 200개 설립 및 2,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정부양곡배송사업단 발대식
201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양곡 배송 사업이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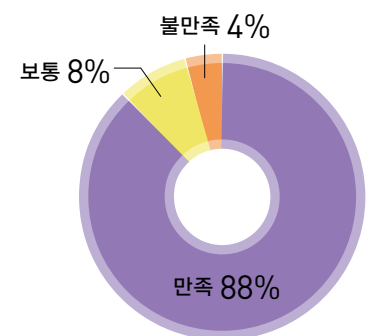


기준에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 일반 택배 회사들 중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배달 업체를 선정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정부 양곡 배송 사업을 자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시범 사업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전국 10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 양곡 배송 사업은 이용자,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자활 사업단이 배달하기 이전에 비해 높게 나왔다.

[그림 2]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류	응답자	비율
만족	1,075	88%
보통	99	8%
불만족	42	4%
합계	1,216	100%



정부 양곡 배송 사업은 배달 사업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사업을 자활 사업으로 연계한다는 의미에서 재정 효율성 측면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저소득층이 직접 집행함으로써 지역 복지 연계 사례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2. 향후 과제 및 방향

최근 정부 양곡 배달 사업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현안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달 수량이 1천 포 미만 지역의 경우 양곡 배송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양곡 배달이 월 말 10일 간 집중되어 나머지 기간에는 배달할 물량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등 정부 재정 투입 배달 사업을 추가로 개발하고, 민간 기업과의 연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지자체 발행 간행물의 발송 용역 대행을 위탁 추진하는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한 수익 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번째 자가용 영업 행위로 인한 위법 소지가 있어 영업용 차량 구입 등 인허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송 사업을 하는 센터는 영업용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영업용 화물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연내로 배송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곡 배송 네트워크 중앙 사무국을 두고 운수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상의 법적 문제 해결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셋째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다. 교육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배송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센터는 전체가 시범 사업 이전에 배송 경험이 있는 센터를 멘토로 삼아 실습 훈련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BI 개발, 유니폼 착용 등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송 사업의 안정은 배달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앞으로 정부 양곡 배송 사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 중으로 (전국)광역 자활공동체 인정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인정 등을 통하여 정부 재정 투입 배달 사업을 수주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양곡배송사업 BI



희망나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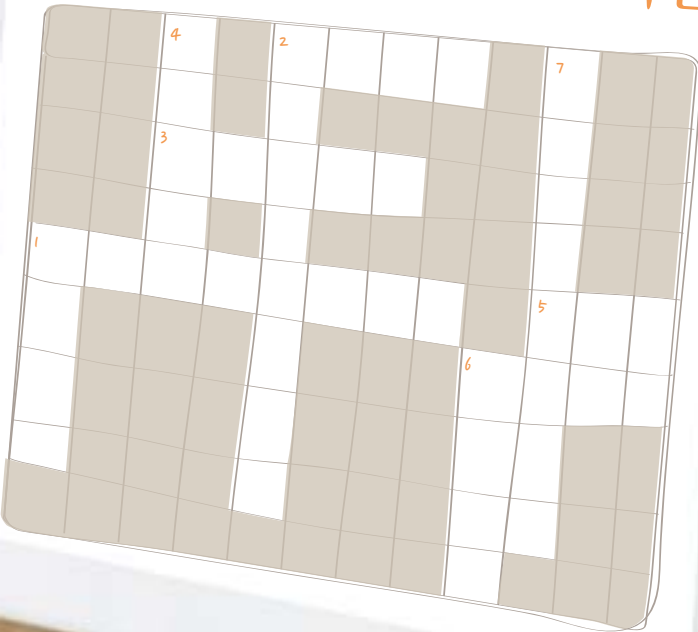
손, 새, 무지개, 미소를 소재로 희망을 나르는 것을 형성화하여 '손에서 전해지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단순한 양식과 물품의 전달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정부택배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빈칸의 답을 ‘자활읽기 제6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31일까지 cssf@cssf.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22P에 소개된 **홍삼**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풀어보는 자활 퍼즐



가로

- 1. 저소득층에게 복지-일자리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취업 촉진 및 취업 유지를 강화하고, 수행 기관의 서비스 경쟁 유도 및 실적에 따른 성과급 체계 구축으로 자활 성과를 제고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된 성과 관리형 시범 사업의 이름은? **Hint** 24p
- 2. 클라이언트가 삶의 질 향상 혹은 욕구 충족 방안, 지역사회 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간의 분절이나 중복을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Hint** 8p
- 3. 자활공동체의 모태가 되어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 5. 자활공동체가 생산하는 상품을 자활 000이라 한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우수 자활 000은 좋은 사람들이 만든 좋은 상품이라는 뜻의 굿스 굿스(good's goods)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한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Hint** 14p
- 6. 최신 자활 정보를 공유하여 자활에 대한 정보력을 확대하고자 2008년 12월부터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 대표 홍보물의 이름은? 2011년 6월 기준 제6호까지 발행되었으며 더 나은 자활사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토론 마당이라는 의미를 가진.

세로

- 1. 0000통장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일을 통해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 및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으로, 2011년 5월부터 민간 매칭금 지급시기가 탈수급 해지 시 일괄 정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
- 2. 000000000은 근로 능력은 있으나 근로 의욕이 낮은 조건부 수급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디딤돌사업과 혼란되는 점이 있어 명칭을 통일함.
- 4.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고, 빈곤층의 수급자 진입 예방을 위하여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정책 과제 이름은 00000 프로젝트 이다. '희망으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B를 개발함.
- 6. 자활 사업 지원 체계는 2011년 현재 중앙0000, 7개 광역0000, 247개 지역0000가 있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Hint** 34p
- 7.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된 000000000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읽기〉는 더 나은 자활사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토론 마당입니다.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